소방시절절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부개정 2008.1.24 행정자치부령 제422호]

제1장 총칙
第 1 章総則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 1 条(目的) この規則は、「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および同法施行令で委任された事項とその施行に関して必要な事項を規定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개정 2005.12.21>

제 2 조 (개수명령 등의 절차)CD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 1호서식의 개수명령서를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발부하고 별지 제 2 호서식의 개수명령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第 2 条(改善命令などの手続き) ①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以下"法"という。)第 5 条の規定によって消防対象物の改善、以前、除去、使用の禁止または制限、公使の停止または中止その他に必要な措置をしようとする時には、別紙第 1 号書式の改善命令書を該当消防対象物の関係人に発行して、別紙第 2 号書式の改善命令台帳にこれを記載して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5.12.2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개수명령으로 관계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진 그 밖의 증빙자료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②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法第 5 条の規定による改善命令で関係人に損失が発生した場合には、これを判断できる調査確認書を作成して写真その他の証明資料を共に保管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3 조 (손질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CD 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 3 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 21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관리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축물관리대장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1, 2007.12.13>

第 3 条(損失補償請求者が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書類等) ① 法第 5 条の規定による免除で損失を受けた者が損失補償を請求しようとする時には、別紙第 3 号書式の損失補償請求書(電子文書になった請求書を含む。)に、次の各号の書類(電子文書を含んだも

の) を添付して特別市長、広域市長または道知事 (以下”市・道知事”という。) 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場合、担当公務員は、「電子政府法」第 21 条第 1 項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建築物管理隊長 (消防対象物の関係人であることを証明できる書類が建築水の管理隊長である場合に限る。) を確認するべきで、請求人が確認に同意しない場合には、その書類を提出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5.12.21,2007.12.13>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은 제외한다)

1　消防対象物の関係人であることを証明できる書類(担当公務員の確認に同意する場合には建築物管理台帳は除く。)

2.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그 밖의 증빙자료

2　損失を証明できる写真その他の証明資料

@시·도지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1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손실 보상을 청구한 자와 연명으로 별지 제 4 호서식의 손실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5.12 긴>

② 市・道知事は、「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以下”令”という。)第 11 条第 2 項の規定による損失補償に関して協議が成り立った時には、損失補償を請求した者と連名で別紙第 4 号書式の損失補償合意書を作成してこれを保管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2 장 소방시쳴의 섣칙 및 유지
第 2 章　消防施設の設置および維持

제 1절　건축허가둥의 동의
第 1 節　建築許可等の同意

제 4 조 (건축허가둥의 동의요구)(1)법 제 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둥의 신축·증 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냐에 해당하는 기관이 건축물 동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 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1>

第 4 条(建築許可等の同意要求)　① 法第 7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建築物等の新築、修繕、改築、再築または以前の許可、協議および使用承認(以下’建築許可等”という。)の同意要求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機関が建築物同意施工者または所在地を管轄する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に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5.12.21>

1. 영 제 12조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과 영 별표 2 의 규정에의한 위험물제조소등의 경우 건축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ㅣ건축법」

제 25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주택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동법 제 29 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엽촉진볍」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송인 및 동법 제１３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하 !'건축허가청 ”이라 한다)

1 令英第 12 条第 1 項第 1 号ないし第 4 号の規定による建築物等と令別表 2 の規定による危険物製造所などの場合、「建築法」第 8 条の規定による許可(「建築法」第 25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協議、「住宅法」第 16 条の規定による承認、同法第 29 条の規定による使用検査、「学校施設作業チョクチン法」第 4 条の規定によるソングであるおよび同法第 13 条の規定による使用承認を含む。)の権限がある行政機関(以下’建築許可庁”という。)

2. 영 별표 2 의 규정에 의한 가스시설의 경우 교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4 조/ 「도시가스사엽볍」 제 3 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볍」 제 3 조 및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2 令別表 2 の規定によるガス施設の場合、「高圧ガス安全管理法」第 4 条、「都市ガス作業法」第 3 条または「液化石油ガスの安全管理および作業法」第 3 条および第 5 条の規定による許可の権限を持つ行政機関

3. 영 별표 2 의 규정에 의한 지하구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엽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줬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영 제 12 조제 3 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 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 21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옹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5.12.21, 2008.1.24>

3 令別表 2 の規定による地下溝の場合、「国土の計画および利用に関する法律」第 88 条第 2 項の規定による都市計画施設作業に関する実施計画の認可の権限を持つヘンジョン機関第 1 項各号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機関は、令第 12 条第 3 項により建築許可等の同意を要求する時には、同意要求書(電子文書になった要求書を含む。)に次の各号の書類(電子文書を含む。)を貼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電子政府法」第 21 条第 1 項による行政情報の挙動利用を通じて添付書類に対する情報を確認できる場合には、その確認で添付書類の提出に替えることができる。<改正 2005.12.21,2008.1.24>

l건축법 시행규칙」 제 6 조 저118 조 및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 다읍 각 목의 설계도서. 다만/ 가목 및 다목의 설계도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 4 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建築法施行規則」第 6 条、第 8 条および第 12 条の規定による建築許可申込書および建築許可書または建築、大修繕、用途変更申告書など建築許可等を確認できる書類の写本 2 部、次の各目の設計図。 ただし、アおよびウの設計図からは、「消防施設工事業法施行令」第 4 条による消防施設工事着工申告対象に該当する場合に限る。

가. 건축물의 단변도 및 주단면 상세도(내장재료를 명시한 것에 한한다)
ア　建築物の断面図および側断面詳細図(内蔵材料を明示したものに限る。)

나‘ 소방시설(기계 전기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충별 평변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イ　消防施設(機械電気分野の施設をいう。)の階別評図および階別系統図(施設別計算書を含む。)

나. 창호도
ウ　窓戸図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3　消防施設設置計画表

4.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4　消防施設設計業登録証と消防施設を設計した技術人材者の技術資格証

;5)저 111 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들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 7조제 3 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둥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7 일(허가신청한 건축 물 등의 연면적이 3 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 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통의여부 들 회신하여야 한다;
5　第 1 項の規定による同意要求受けた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法第 7 条第 3 項の規定によって建築許可等の同意要求書類を受け付けた日から 7 日(許可申請した建築物等の延面積が 30000 ㎡以上である場合には 10 日)以内に建築許可等の同意の有無回答しなければならない。

핏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 3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④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第 3 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 2 項の規定による同意要求書および添付書類の補完が必要な場合には 3 日以内の期間を定めて補完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補完期間は第 3 項の規定による回答期間に算入しなくて y 補完期間内に補完しない時には同意要求書を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

갚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건축허가청 등이 그 건축허가 등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 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第 1 項の規定による建築許可等の同意を要求した建築許可庁などが、その建築許可等を取り消した時には、取り消した日から 7 日以内にその事実を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にこ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C6)*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여부를 회선하는 때에는 별지 제 5 호서식의 건축허가등의동의대장에 이들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第 3 項の規定によって同意の有無を解糖する時には、別紙第 5 号書式の建築許可等の同意台帳にこれら記載して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5 조 삭제 <2007.3.23>

제 6 조 삭제 <2007.3.23>

제 7 조 (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 116 호 가목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라 함은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6 미터 이하, 2 층 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10 미터 이하이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구조를 말 한다.

第 7 条(燃焼恐れがある建築物の構造) 令別表 4 消火設備の消防施設適用基準欄第 6 号アで「行政自治部令が定める燃焼恐れがある構造」とは、建築物台帳の建築物現黄桃に表示された敷地境界線中に 2 以上の建築物がある場合としてそれぞれの建築物が違う建築物の外壁から水平距離が 1 階においては 6m以下、 2 階以上の階においては 10m以下で開口部が違う建築物に向かって設置された構造をいう。

제 2절 방염처랴엽
第 2 節 防炎処理業

제 8 조 (방염처리엽의 둥록신청) 법 제 1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을 동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9 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읍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 2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2.21, 2008.1.24>

第 8 条(防炎処理業の登録審査) 法第 14 条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防炎処理業を登録しようとする者は、別紙第 9 号書式の防炎処理業登録申込書(電子文書になった申込書を含む。)に、次の各号の書類(電子文書を含む。)を添付して、市・道知事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電子政府法」第 21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添付書類に対する情報を確認できる場合には、その確認で添付書類の提出に替えることができる。<改正 2005.12.21,2008.1.24>

1. 별지 제 10 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 섬유 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1 別紙第 10 号書式の消防技術人力連名部および技術資格手帳または加工繊維分野学科の卒業証明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法人登記簿謄本(法人の場合に限る。)

3. 영 별표 7 제2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명세서
3　令別表 7 第 2 号イの規定による防炎処理施設および試験機器ミョンセソ

제 9 조 (방염처리엽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등) 폐시·도지사는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업의 동록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방염처리업의 인력·시험실·시설 및 시험기기가 영 제 21 조 및 별표 7 의 규정에 의한 방혐처리엽의 둥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저1111 호서식의 방염처리엽등록증 및 별지 제 12 호서식의 방염처리엽등록수첩을 업종별로 교부하고 ,소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방염처리업 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 13 호서식의 방염처리업둥록대장에 둥록 사항을 기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第 9 条(防炎処理業の登録証および登録手帳の交付等) ① 市・道知事は、第 8 条の規定による防炎処理業の登録申請を受けた場合、当該防炎処理業の人力、試験室、施設および試験機器が令第 21 条および別表 7 の規定による防炎処理業登録基準に適合すると認められる時には、別紙第 11 号書式の防炎処理業登録証および別紙第 12 号書式の防炎処理業登録手帳を業種別で交付して、消防技術人力の技術資格手帳にその防炎処理業の技術人力者であることを記載して交付して、別紙第 13 号書式の防炎処理業登録手帳に登録事項を記載して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강시·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들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市・道知事は、第 8 条の規定によって提出された書類審査した結果、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時には、10 日以内の期間を定めてこれを補完するようにすることができる。

1.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때
1　添付書類が不備になっている時

2. 신청서 및 첩부서류의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2　申込書および添付資料の記載内容が明確でない時

:: D 시·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려업둥록증을 교부하거나 법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市・道知事は、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防炎処理業登録証を交付したり、法第 19 条の規定によって登録の取消しまたは営業停止処分を一時には、これを特別市・広域市または道(以下"市・道"という)の公報に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10 조 (방염처랴엽의 등록증·등록수챔의 째.il!.부 및 반납) 때법 제 1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엽자는 방염처리엽둥록증 또는 둥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청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第 10 条(防炎処理業の登録証、登録手帳の紛失および返却) ① 法第 14 条第 3 項の規定によって防炎処理業者は、防炎処理業登録証または登録手帳をなくしたり、防炎処理業登録証または登録手帳が壊して使えない場合には、市・道知事に防炎処理業登録証または登録手帳の再交付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

〔2:방염처리엽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 14 호서

식의 방염처리업등록증(등록수접)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1>

② 防炎処理業者は、第１項の規定によって再交付を申請する時には、別紙第 14 号書式の防炎処理業登録証再交付申込書(電子文書になった申込書を含む。)を市・知事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5.12.21>

G})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 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집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 市・道知事は、第１項の規定による再交付申込書を提出させた時には、３日以内に防炎処理業登録証または登録手帳を再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방염처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 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엽등록증 빛 둥록수첩을 반답하여야 한다

④ 防炎処理業者は、次の各号の１に該当する時には、遅滞なしに市・道知事に防炎処理業登録証および登録手帳を返納しなければならない。

.

1. 법 제１９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１ 法第 19 条の規定によって登録が取り消しになった時

2. 방염처리업을 휴·폐업한 때

２ 防焔処理業を休、廃業した時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은 때. 다만/ 방염처리엽둥록증 또는 둥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툴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３ 第１項の規定によって再交付を受けた時。ただし、防炎処理業登録証または登録手帳をなくして再交付を受けた場合には、イトゥル再び探した時に限る。

제11조 (둥록사항의 변청신고 사항) 법 제16조의 규정에서 ㅂ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第 11 条(登録事項の変更申告事項) 法第 16 条の規定で「行政自治部令が決める重要事項」とは、次の各号の１に該当する事項をいう。

1. 명칭·상호 또는 영엽소소재지

１ 名称、相互または営業所所在地

2. 대표자

２ 代表者

3. 기술인력

３ 技術人力

제 12 조 (둥록사항의 변갱신고 둥) 파방염처리업자는 법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 일 이내에 별지 제 15 호서식의 방염처리엽둥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운서로 된 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읍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률 포합한다)률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第 12 条(登録事項の変更申告等) ① 防炎処理業者は、法第 16 条の規定によって登録事項の変更がある時には、変更日から 30 日以内に別紙第 15 号書式の防炎処理業登録事項変更申告書(電子文書での申告書を含む。)に、その変更事項別に次の各号の区分による書類(電子文書率抱合する)を添付して市・道知事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5.12.21;2006.9.7>

1. 명칭·상호 또는 영엽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방염처리엽등록증 및 등록수첩
1 名称、相互または営業所所在地を変更する場合 :防炎処理業登録証および登録手帳

2. 대표자들 변청하는 경우 :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代表者を求める場合:防炎処理業登録証および登録手帳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3 技術人力を変更する場合

가. 방염처리엽등록수첩
ア 防炎処理業登録手帳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イ 変更された技術人力の技術資格手帳または加工繊維分野学科の卒業証明書

나. 별지 제 10 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ウ 別紙第 10 号書式の消防技術人力連名部

2 제 1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 21 조제 1 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9.7;2008.1 .24>
② 第 1 項第 1 号または第 2 号による申告書を提出させた担当公務員は、「電子政府法」第 21 条第 1 項により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法人登記簿謄本(法人である場合に限る。)または事業者登録証写本(個人である場合に限る。)を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申告であるこの確認に同意しない場合には、これを添付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新設 2006.9.7;2008.1.24>

쥤시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 일 이내에 방염처리엽등록증 빛 둥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방염처리엽둥 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접)에 그 변경된 사항을 가 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9.7>
③ 市・道知事は、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変更申告を受けた時には、5 日以内に防炎処理業登録証および登録手帳を新しく交付したり、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提出された防炎処理業登録証および登録手帳と技術人力の技術資格手帳にその変更された事項を行って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6.9.7>

£시·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 13 호서식의 방염처리엽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9.7>

④ 市・道知事は、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変更宣告を受けた時には、別紙第 13 号書式の防炎処理業登録台帳に、変更事項を記載して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6.9.7>

제 13조 (지위승계선고 등) ⑴법 제 17조제 1항 또는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엽자의 지위률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률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 17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별지 제 16호서식의 방염처리엽지위송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후 존속하 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 17호서식의 방염처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읍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1,2006.9.7>

第 13 条 (地位継承宣告等) ① 法第 17 条第 1 項または第 2 項の規定によって防炎処理業者の地位を継承した者は、その地位を継承した日から 30 日以内に法第 17 条第 3 項の規定によって相続人、営業を譲り受けた者または施設の全部を買収した者は、別紙第 16 号書式の防炎処理業地位継承申告書 (電子文書になった宣告書を含む。) に、合併後存続する方法であるまたは合併によって設立される法人は、別紙第 17 号書式の防炎処理業合併申告書 (電子文書になった申告書を含む。) にそれぞれ次の各号の書類 (電子文書を含む) を添付して、市・道知事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5.12.21,2006.9.7>

1.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1 防炎処理業登録証および登録手帳

2. 계약서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契約書写本など地位継承を証明する書類 1 部

3. 삭제 <2006.9.7> 削除
4. 삭제 <2006.9.7> 削除

5. 별지 제 10 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 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5 別紙第 10 号書式の消防技術人力連名部および技術資格手帳または加工・繊維分野学科の卒業証明書

6. 영 별표 7 제2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명세서 1부
6 令別紙 7 第 2 号イの規定による防炎処理施設および試験機器明細書 1 部

@제 1 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 21 조제 1 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읍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② 第 1 項による申告書を提出させた担当公務員は、「電子政府法」第 21 条第 1 項により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次の各号の書類を確認するべきで、申告人が確認に

同意しない場合には、これを提出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新設 2006.9.7,2008.1.24>

1. 법인등기부 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　法人登記簿謄本(地位承継人が法人である場合に限る。)

2.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2　事業者登録証写本(地位承継人が個人である場合に限る。)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14 일 이내에 방염처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9.7>

③　市・道支社は、第1項の規定によって申告を受けた時には、14日以内に防炎処理業登録証および登録手帳を新しく交付して、提出された技術人力の技術資格手帳にその変更事項を記載して交付して、別紙第13号書式の防炎処理業登録台帳に地位継承に関する内容を記載して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6.9.7>

제3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第3章消防対象物の安全管理

제1절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第1節　特定消防対象物の防火管理

제14조 (방화관리자의 선임선고 등)CD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 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1>

第14条(防火管理者の選任宣告等)　①　特定消防対象物の関係人は、法第20条第2項および法第21条の規定によって防火管理者を次の各号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日から30日以内に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5.12.21>

1. 신축 증축·개축 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新築、増築、改築、再築、大修繕または用途変更で該当特定消防対象物の防火管理者を新規で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　該当特定消防対象物の完工日(建築物の場合には「建築法」第18条第3項の規定によって建築物を使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日をいう。以下この条で同じ。)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 급 방화관리대상물 또는 영 제 22 조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2 급

방화관리대상 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2 増築または用途変更によって特定消防対象物が令第 22 条第 1 項第 1 号の規定による 1 級防火管理対象物または令第 22 条第 1 項第 2 号の規定による 2 級防火管理対象物になった場合: 増築工事の完工日または用途変更事実を建築物管理台帳に記載した日.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들 취득한 날. 다만/ 새로 권려들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방화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特定消防対象物を譲り受けたり、「民事執行法」による競売、債務者回復および「破産に関する法律」による患家、「国税徴収法」、「 関税法」または「地方税法」による差し押さえ財産の売却その他にこれに対し準ずる手続きによって関係人の権利を取得した場合: 該当権利取得した日. ただし、新しく管理を取得した関係人が従来の特定消防対象物の関係人が選任申告した防火管理者を解任しない場合を除く。

4. 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방화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4 法第 21 条の規定による特定消防対象物の場合: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が共同防火管理対象に指定した日

5.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날

5 防火管理者を解任した場合: 防火管理者を解任した日

2영 제22조제 1 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9조 및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 및 2급 방화관리 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선임기간내에 있지 아니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관리자의 선임연기를 신청할 수있다

② 令第 22 条第 1 項第 2 号の規定による 2 級防火管理対象物の関係人は、第 29 条および第 34 条の規定による 2 級防火管理対象物の防火管理に関する講習教育および 2 級防火管理対象物の防火管理に関する試験が第 1 項の規定による防火管理者選任期間内になくて防火管理者を選入できない場合には、防火管理者の選任延期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

‘

:: D2 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8 호서식의 2 급방화관리자선임연기신청서에 2 급 방화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 급 방화관리자 시험옹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화관려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 20 조제 6 항 각호의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2級防火管理対象物の関係人は、第 2 項の規定によって申請を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別紙第 18 号書式の 2 級防火管理者選任延期申込書に 2 級防火管理講習教育受付証写本または 2 級防火管理者試験翁視標写本を添付して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に申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防火管理対象物の関係人は、防火管理者が選任される時まで法第 20 条第 6 項各戸の防火管理業務を遂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방화관리자 선임일을 지정하여 2 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第３項の規定による申請を受けた時には、防火管理選任日を指定して２級防火管理対象物の関係人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쥤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２０조제２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및 법 제21 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화관리자(기엽촬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２９조제３항 제30조저112 항 또는 제32조제２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률 겸임하거나 공동으 로 선임되는 차를 포함한다)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２０조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１９호서식의 방화관리자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률 포함한다)률 첩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 조제１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동방화관리자 선임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제２３ 조제１ 항제１ 호부터 져115 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２항제１ 호부터 져113 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1,2007.12.13>

⑤ 特定消防対象物の関係人は、法第 20 条第 2 項の規定による防火管理者および法第 21 条の規定による共同防火管理者(共同キヨプチュァルドン規制緩和に関する特別措置法」第 29 条第 3 項第 30 条第 2 項または第 32 条第 2 項の規定によって防火管理者を兼任したり共同で選任される者を含む。)を選任した時には、法第 20 条第 4 項の規定によって別紙第 19 号書式の防火管理選任申告古書(電子文書になった申告書を含む。)に次の各号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書類(電子文書を含む。)を貼付して、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場合、担当公務員は、「電子政府法」第 21 条第 1 項にともなう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共同防火管理者選任者の国家技術資格証(令第 23 条第 1 項第 1 号から第 15 号までまたは同組第 2 項第 1 号から第 13 号までに該当する者の場合に限る。)を確認するべきで、申告人が確認に同意しない場合には、その書類(国家技術資格証の場合にはその写本をいう。)を提出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5‘12.21,2007.12.13>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캡
1 消防施設管理者資格手帳

2. 삭제 <2007.12.13> 削除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수접(영 제23조제１ 항제６호 내지 져1]10호 및 동조제２항제4 호 내지 제1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3 第 35 条の規定による防火管理者手帳(令第 23 条第 1 項第 6 号イの第 10 号および同条第 2 項第 4 号ないし第 13 号の 1 に該当する者の場合に限る。)

4.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볍 제 20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 업무들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4 防火管理対象物の防火管理に関する業務を監督できる職位にある者であることを証明する書類(法第 20 条第 3 項の規定によって防火管理対象物の関係人が防火管理業務代行するようにする場合に限る。) 1 部

5． r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엽자에게 방화관리엽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 20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5 「危険水安全管理法」第 19 条の規定による自衛消防隊長であることを証明する書類または消防施設管理者に防火管理業を返納する代行するようにした事実を証明できる書類(法第 20 条第 3 項の規定によって消防対象物の自衛消防隊長または消防施設管理業者に防火管理業務を代行するようにした場合に限る。) 1 部

6. r 기엽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 29 조제 3 항 또는 제 30 조제 2 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들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협

6 「企業活動規制緩和に関する特別措置法」第 29 条第 3 項または第 30 条第 2 項の規定によって当該特定消防対象物の防火管理者等兼任できる安全管理者で選任された事実を証明できる書類または選任事項が記録された資格手帳

제 15조 (특정소방대쌍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환 소방훈련과 교육) (1)영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 22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 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 15 条(特定消防対象物の勤務者および居住者に対する消防訓練と教育) ① 令第 22 条の規定による特定消防対象物の関係人は、法第 22 条第 3 項の規定による消防訓練と教育を年 1 回以上実施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消防署長が火災予防のために必要だと認めて 2 回の範囲の中で追加で実施することを要請する場合には、消防訓練と教育を実施しなければならない。

깐소방서장은 영 제 22 조제 1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消防署長は、令第 22 条第 1 項第 1 号の規定による 1 級防火管理対象物の関係人にとって第 1 項の規定による消防訓練を消防機関と合同で実施するようにすることができる。

젠법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法第 22 条の規定によって消防訓練を実施しなければならない関係人は、消防訓練に必要な装備および教材などを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법 제 22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시결과륟 별지 져1120 호서식의 소방훈련·교」라실시결과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2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防火管理対象物の関係人は、消防訓練と教育を実施した時には、法第 22 条第 3 項の規定によってその実施結果を別紙第 20 号書式の消防訓練・教育実施結果記録簿に記載して、2 年間保管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16조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1;l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시·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 16 条(消防安全教育対象者等) ①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は、法第 23 条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消防安全教育を実施しようとする時には、教育日時、場所など教育に必要ある事項を明示して教育である 10 日前まで教育機関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깐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영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으로 하고 ㅛ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는 다중이용엽의 영엽주로 한다.

② 法第 23 条第 3 項の規定によって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が消防安全教育を実施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は、令第 13 条の規定による多重利用業でして、消防安全教育の対象者は、多重利用業の営業者主にする。

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업의 직능단체와 협의하여 교육일정을 정할 수 있다.

③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消防安全教育を実施しようとする時には、多重利用業の職能団体と協議して教育日程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제2절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第 2 節 消防施設などの自主点検

제17조 (소방시설등 자제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라 함은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第 17 条(消防施設等と自主点検技術資格者の範囲) 法第 25 条第 1 項で「行政自治部令が定める技術資格者」とは、防火管理者で選任された消防施設管理者および消防技術士をいう。

제18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폐볍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동의 자체점겁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다'

第 18 条(消防施設等自主点検の区分および対象) ① 法第 25 条第 3 項の規定による消防施設洞の自主点検の区分、対象、点検者の資格、点検方法および点検回数は、別表 1 のとおり。

2)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정검장비는 영 별표 8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엽의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로 한다-

② 法第 25 条第 3 項の規定による消防施設別点検装備は、令別表 8 第 2 号の規定による消防施設管理業の装備基準による装備でする。

;3;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동점검표·점겁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③ 第 1 項の規定による自主点検区分による点検事項、消防施設等点検票、点検人員および細部点検方法その他の自主点検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消防防災庁長がこれを定めて告示する。

제 19 조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법 제 25 조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 의 규정에 의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2 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하고/ 별표 1 의 규정에 의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 일 이내에 그 결과들 기재한 별 지 제 21 호서식의 소방시설둥점검결과보고서에 제 18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 19 条(点検結果報告書の提出) 法第 25 条第 2 項および第 3 項の規定によって別表 1 の規定による作動機能点検を実施した者は、その点検結果を 2 年間自主保管しなければならなくて、別表 1 の規定による総合精密点検を実施した者は、30 日以内にその結果を記載した別紙第 21 号書式の消防施設ど等点検結果報告書に、第 18 条第 3 項の規定によって消防防災庁長が定めて告示する消防施設等点検票を添付して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20 조 (점검 수수료) 법 제 25 조제 4 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 10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엔 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개정 2005.12.21 >

第 20 条(点検手数料) 法第 25 条第 4 項で「行政自治部令が定める方式」とは、「エンジニアリング技術振興法」第 10 条第 2 項の規定によって科学技術部長官が認可したエンジニア作業代価の基準中、実費定額加算方式をいう。<改正 2005.12.21 >

제 3절 소방시설관리업
第 3 節 消防施設管理業

제 21 조 (소방시설관랴엽의 등록신청) 파법 제 2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22 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엽둥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률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률 포함한다)를 점부하여 시·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t 2006.9.7>

第 21 条(消防施設管理業の登録申請) ① 法第 29 条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消防施設管理業をしようとする者は、別紙第 22 号書式の消防施設管理業登録申請書(電子文書になった申込書を含む。)に、次の各号の書類(電子文書を含む)を添付して、市・道知事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5.12.2t 2006.9.7>

1. 별지 제 23 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1 別紙第 23 号書式の技術人力連名部および技術資格手帳

2 삭제 <2006.9.7> 削除

3. 영 별표 8 제 2 호의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명세서 1부
3 令別表 8 第 2 号の装備基準による装備明細書 1 部

2) 저111 항에 따른 신청서들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ㅣ전자정부법」 제 21 조제 1 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둥기부 둥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② 第 1 項による申込書を提出させた担当公務員は、「電子政府法」第 21 条第 1 項に取りなさい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法人登記簿謄本(法人である場合に限る。)を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申請人が確認に同意しない場合には、これを提出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新設 2006.9.7,2008.1.24>

제 22 조 (소방시절관리엽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등) ㅌ1] 시·도지사는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한 동록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소방시설관리업의 인력과 장비가 영 제 36 조 및 별표 8 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엽의 둥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 24 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엽등록증 및 별지 제 25 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엽등록수첩을 교부하고 ᵧ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자임 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 26 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둥록대장에 둥록사항을 기재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第 22 条(消防施設管理業の登録証および登録手帳交付等) ① 市・道知事は、第 21 条の規定による登録申請を受けた場合、当該消防施設管理業の人力と装備が令第 36 条および別表 8 の規定による消防施設管理業の登録基準に適合すると認められる時には、別紙第 24 号書式の消防施設管理業登録証および別紙第 25 号書式の消防施設管理業登録手帳を交付して、技術人力の技術資格手帳に登録された消防施設管理業の技術人力者を記載して交付して、別紙第 26 号書式の消防施設管理業登録証に登録したことを記載して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강시·도지사는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들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10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市・道知事は、第 21 条の規定によって提出された書類審査した結果、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時には、10 日以内の期間を定めてこれを保管するようにすることができる。

1.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때
1 添付書類が不備になっている時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2 申込書および貼付書類の記載内容が明確でない時

:: D 시·도지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둥록증을 교부하거나 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시 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1>

② 市・道知事は、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消防施設管理業登録証を交付したり、法第 34 条の規定によって登録の取消しまたは営業停止処分を実施した時には、市・道の公報に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5.12.21>

제 23 조 (소방시설관랴엽의 등록증·등록수챔의 재교부 및 반납) (jj 법 제 29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소방시설관리엽둥록증 또는 둥록수첩을 잃어버리거 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접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第 23 条(消防施設管理業の登録証・登録手帳の再交付および返却) ① 法第 29 条第 3 項の規定によって消防施設管理業者は、消防施設管理業登録証または登録手帳をなくしたり、消防施設管理業登録証または登録手帳を壊して使えない場合には、市・道知事に消防施設管理業登録証または登録手帳の再交付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

〔2:소방시설관리엽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 27 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엽등록증(등록수접)재교부신청서(전자문저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 다)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1>

② 消防施設管理業者は、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再交付を申請する時には、別紙第 27 号書式の消防施設管理業登録証再交付申込書(電子文書になった申込書を含む。)を市・道知事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5.12.21>

G})시·도지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 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 市・道知事は、第 1 項の規定による再交付申込書を提出させた時には、3 日以内に消防施設管理業登録証または登録手帳を再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관리엽등록증 빛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消防施設管理業者は、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時には、遅滞なしに市・道知事にその消防施設管理業登録証および登録手帳を返却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1 法第 34 条の規定によって登録が取消しになった時

2. 소방시설관리업을 휴 폐업한 때
2 消防施設管理業をヒュ廃業した時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은 때.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률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2 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再交付を受けた時。 ただし、登録証または登録手帳をなくして再交付を受けた場合にはこれを再び探した時に限る。

24 조 (등록사항의 변갱신고 사항) 법 제 31 조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11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第 24 条(登録事項の変更申告事項) 法第 31 条で「行政自治部令が定める重要事項」とは、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事項をいう。

1. 명칭·상호 또는 영엽소소재지
1 名称、社号または営業所所在地

2. 대표자
2 代表者

3. 기술인력
3 技術人力

제 25 조 (등록사항의 변갱신고 등) (1)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 3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둥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 일 이내에 별지 제 28 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엽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운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읍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들 포합한다)들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1, 2006.9.7>

第 25 条(登録事項の変更申告等) ① 消防施設管理業者は、法第 31 条の規定によって登録事項の変更がある時には、変更日から 30 日以内に別紙第 28 号書式の消防施設管理業登録事項変更申告書(電子文書となった申告書を含む。)にその変更事項別に、次の各号の区分による書類(電子文書を含む。)添付して、市・道知事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5.12.21,2006.9.7>

1. 명칭·상호 또는 영엽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엽등록증 및 등록수첩

1 名称、社号または営業所所在地を変更する場合: 消防施設管理業登録証および登録手帳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려업둥록증 빛 둥록수첩

2 代表者を変更する場合: 消防施設管理業登録証および登録手帳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3 技術人力を変更する場合

가.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ア 消防施設管理業登録手帳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イ 変更された技術人力の技術資格手帳

나. 별지 제23 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ウ 別紙第 23 号書式の技術人力連名部

2)제 1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볍」져1121 조제 1 항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옹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9.κ 2008.1.24>

② 第 1 項第 1 号または第 2 号による申告書を提出させた担当公務員は、「電子政府法」第 21 条第 1 項により法人登記簿謄本(法人である場合に限る。)または事業者登録証写本(個人である場合に限る。)を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申告人が確認に応じない場合には、これを添付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新設 2006.9.κ2008.1.24>

젠시 도지사는 져11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률 받은 때에는 5 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소방시설관리엽등록증 빛 둥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9.7>

③ 市・道知事は、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変更申告を受けた時には、5 日以内に消防施設管理業登録証および登録手帳を新しく交付したり、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提出された消

防施設管理業登録証および登録手帳と技術人力の技術資格手帳にその変更された事項を記載して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6.9.7>

£시·도지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 26 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엽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9.7>

④ 市・道知事は、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変更申告を受けた時には、別紙第 26 号書式の消防施設管理業登録台帳に変更事項を記載して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6.9.7>

제 26 조 (지위승계신고 등) 폐법 제 32 조제 1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엽자의 지위를 송겨l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법 제32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률 인수한 자는 법 별지 제 29 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 30 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읍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들 포함한다)들 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1, 2006.9.7>

第 26 条(地位継承申告等) ① 法第 32 条第 1 項または第 2 項の規定によって消防施設管理業者の地位を継承した者は、その地位を継承した日から 30 日以内に法第 32 条第 3 項の規定によって相続人、営業を譲り受けた者または施設の全部を買収した者は、法別紙第 29 号書式の消防施設管理業地位継承申告書(電子文書になった申告書を含む。)に、合併後存続する方法であるまたは合併によって設立される法人は、別紙第 30 号書式の消防施設管理業合併申告書(電子文書になった申告書を含む。)にそれぞれ次の各号の書類(電子文書を含む。)を添付して、市・道知事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5.12.21,2006.9.7>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챔
1 消防施設管理業登録証および登録手帳

2. 계약서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契約書写本など地位継承を証明する書類 1 部

3. 삭제 <2006.9.7> 削除
4. 삭제 <2006.9.7> 削除

5. 별지 제 23 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5 別紙第 23 号書式の消防技術人力連名部および技術資格手帳

6. 영 별표 8 제2 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명세서 1부
6 令別表 8 第 2 号の装備基準による装備明細書 1 部

2) 제 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 21 조제 1항에 따 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읍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 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9.7, 2008.1.24>

② 第 1 項による申告書を提出させた担当公務員は、「電子政府法」第 21 条第 1 項により行政

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次の各号の書類を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申請人がこれに対し同意しない場合には、これら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新設 2006.9.7,2008.1.24>

1. 법인등기부 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　法人登記簿謄本(地位承継人が法人である場合に限る。)

2. 사업자동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2　事業者登録証写本(地位承継人が個人である場合に限る。)

:: D 시 도지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 26 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9.7>

③　市・道知事は、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申告を受けた時には、消防施設管理業登録証および登録手帳を新しく交付して、/技術人力の資格証および資格手帳にその変更事項を記載して交付して、別紙第 26 号書式の消防施設管理業登録台帳に地位継承に関する事項を記載して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6.9.7>

제 27 조 (과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정금의 부과금액 등) 법 제 35 조제 2 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정금의 부과기준 은 별표 2 와 같다.

第 27 条(課徴金を賦課する違反行為の種別と課徴金の賦課金額等)　法第 35 条第 2 項の規定によって課徴金を賦課する違反行為の種別とそれに対する課徴金の賦課基準は、別表 2 のとおり。.

제 28 조 (과정금 및 과태료 쟁수절차) 법 제 35 조제 2 항 및 영 제 40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 한 과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빛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1>

第 28 条(課徴金および過怠料徴収手続)　法第 35 条第 2 項および令第 40 条第 4 項の規定にしてある課徴金および過怠料の徴収手続きに関しては、「国庫金管理法施行規則」 を準用する。 この場合、過怠料の納入告知書には、異議方法および異議期間等を共に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5.12.21>

제 4 장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등
第 4 章防火管理者等に対する教育等

제 1절 방화관리자의 강습교육
第 1 節　防火管理者の講習教育

제 29 조 (방화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설시) ;I:;법 제 41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의 강습교육의 일정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第 29 条(防火管理者に対する講習教育の実施)　①　法第 41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防火管理者の講習教育の日程回数など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韓国消防安全協会の長(この項”協会長’という。)が年間

計画を樹立して実施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⑵ 협회장은 법 제 41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 교육실시 20 일전까지 일시 장소 그 밖의 강습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한국소 방안전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協会長は、法第 41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講習教育を実施しようとする時には、講習教育実施 20 日前まで日時、場所その他の講習教育実施に関して必要な事項を韓国消防安全協会のインターネット ホームページおよび掲示板に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5)협회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 31 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 하고 별지 제 32 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병부대장을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작성·보관하 여야 한다.

③ 協会長は、講習教育を実施した時には、終了者に別紙第 31 号書式の修了証を交付して、別紙第 32 号書式の講習教育終了者添付台帳を講習教育の種類別に作成、保管しなければならない。

찌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교육을 받는 자가 3 시간 이상 결강한 때에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④ 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講習教育を受ける者が 3 時間以上欠講した時には、修了証を交付しない。

제 30 조 (강습교육 수강신청 둥) Ijl 법 져1141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캉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별지 제 33 호서식의 강습교육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읍 각 호의 서류(전자운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져1121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읍할 수 있다<개정 2005.12.21, 2008.1.24>

第 30 条(講習教育受講申請等) ① 法第 41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講師教育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講習教育の種類別に別紙第 33 号書式の講習教育願書(電子文書になった願書を含む。)に、次の各号の書類(電子文書を含む。)を添付して、協会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電子政府法」第 21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添付書類に対する情報を確認できる場合には、その確認で添付書類の提出に行く村することができる。<改正 2005.12.21,2008.1.24>

1. 사진(가로 35 센티미터×세로 4.5 센티미터) 4 매

1 写真(横 3.5cm×縦 4.5cm) 4 枚

2. 위험물안전관리자수협 사본(위험물안전관려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한다) 1부

2 危険物安全管理者水産協同組合写本(危険物安全管理法によって安全管理者講習教育を修了した者に限る。) 1 部

3. 재직증명서(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에 한한다)

3 在職証明書(公共機関に在職する者に限る。)

4. 방화관리자 경력증명서(1 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4　防火管理者経歴証明書(1 級防火管理対象物の防火管理に関する講習教育を受けようとする者に限る。)

〔2〉협회장은 강습교육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協会長は、講習教育願書を受け付けた時には、受講証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31조 (강습교육의 강사) 강습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한다.

第31条(講習教育の講師)　講習教育を担当する講師は、科目別で消防員以上の消防公務員または、消防に関する学識と経験が豊富な者中で協会長が委嘱する。

제32조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칸) 1급.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장습교육과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방화관리자의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3과 같다.

第32条(講習教育の科目および時間)　1級、2級防火管理対象物の防火管理に関する講習教育と公共機関の防火管理に関する教育第5条第1項第4号の規定による公共機関防火管理者の講習教育の科目および時間は別表3のとおり。.

제2첼 방화관랴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 등
第2節　防火管理対象物の防火管理に関する試験等

제33조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용시 자격자) (1)영 제23조저111 항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 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1급방화관리자시험”이라 한 다)의 응시자는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第33条(防火管理に関する試験用資格者)　①　令第23条第1項第9号および第10号の規定による1級防火管理対象物の防火管理に関する試験(以下"1級防火管理者試験”という。)の受験者は、次の各号に該当する者とする。

1.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　1級防火管理対象物の防火管理に関する講習教育を修了した後、2年が経過しない者

2.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청과하지 아니한 자

2　公共機関の防火管理に関する場第5条第4号の規定による講習教育を修了した後、2年が経過しない者

:영 제2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 (이하 ,2 급방화관리자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자는 다읍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로한다.

②　令第23条第2項第4号の規定による2級防火管理対象物の防火管理に関する試験(以下’2級防火管理者試験”という。)の受験者は、次の各戸の1に該当する者とする。

1. 제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第 1 項各戸の 1 に該当する者

2. 2 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 년이 경과하지 아 니한자
2　2 級防火管理対象物の防火管理に関する講習教育を修了した後、2 年が経過しない者

제 34 조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둥) 파1급 또는
2 급방화관려자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第 34 条(試験方法、試験の公告および合格者決定等) ①1 級または 2 級防火管理者試験は、選択型を原則でするものの、記入型を加味することができる。

쥤소방방재정장은 1 급 또는 2 급방화관리자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옹시자격· 시험과목·일시·장소 빛 웅시절차 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웅시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 일전에 1 개 이상의 일간신분(ｉ선운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 12 조제 1 항제 6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으로서 동법 제 2 조제 2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1>
②　消防防災庁長は、1 級または 2 級防火管理者試験を実施しようとする時には、受有資格、試験科目、日時、場所および受験手続き等に関して必要な事項をすべての受験希望者が知ることが出来るように試験施行である 30 日前に 1 個以上の日刊身分(「善友は背中の自由と機能保障に関する法律」第 12 条第 1 項第 6 号の規定によって全国を普及地域で登録した日刊新聞として同法第 2 条第 2 号アまたはイに該当するものをいう。)に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5.12.21>

G}) 방화관리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34 호서식의 I 급 또는 2 급방화관리자시험응시원서에 사진(가로 3.5 센티미터 ×세로 4.5 센티미터) 2 매와 방화관리자강습교육수료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防火管理者試験に受験しようとする者は、別紙第 34 号書式の I 級または 2 級防火管理者試験受験願書に写真(横 3.5cm×縦 4.5cm) 2 枚と防火管理者講習教育修了証写本 1 部を添付して消防防災庁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소방방재청장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 급 방화관리자시험응시원서를 접 수한 때에는 용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消防防災庁長は、第 3 項の規定による 1 級または 2 級防火管理者試験受験願書を受け付けた時には受験票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쥤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 급방화관리자시험의 과목은 별표 3 의 1급 또는 2 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과목으로 한다,
⑤　第 3 項の規定による 1 級または 2 級防火管理者試験の科目は、別表 3 の 1 級または 2 級防火管理対象物の防火管理に関する講習科目とする。

06)저 111 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 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 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 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⑥　第 1 項の規定による試験においては、各科目 100 点を満点でして各科目 40 点以上、全科目平均 60 点以上を得点した者を合格者とする。

깐시험문제의 출제방법/ 시험위원의 위촉/ 합격자의 발표/ 응시수수료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채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⑦　試験問題の出題方法、試験委員の委嘱、合格者の発表、受験手数料および不正行為者に対する措置など試験実施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消防防災庁長がこれを定めて告示する。

제 35 조（방화관리자수첩 교부）(1)다읍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방화관리자수칩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방화관리자수캡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第 35 条(防火管理者手帳交付）①　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者が防火管理者手帳を交付してもらおうとする時には、消防防災庁長に防火管理者手帳の交付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

1.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하여 1급 2 급방화관리자시험에 합격한 자
1　第 34 条の規定によって 1 級、2 級防火管理者試験に合格した者

2. 영 제23조져111항제6호 내지 제8호 및 동조져112 항제5호 내지 제13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令第 23 条第 1 項第 6 号ないし第 8 号および同条第 2 項第 5 号イないし第 13 号の 1 に該当する者

2 소방방재정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수칩의 교부들 신청받은 때에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 방화관리자수챔 2 급 방화관리대상물 방화관리자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消防防災庁長は、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防火管理者手帳の交付申請受けた時には、1 級防火管理対象物防火管理者手帳、2 級防火管理対象物防火管理者手帳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짜소방방재정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그 수첩을 잃어버리거 나 수첩이 헐어 못쓰게 되어 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수협을 재교부하여야 한 다.

③　消防防災庁長は、第 1 項の規定による手帳を交付してもらった者がその手帳をなくしたり、手帳が壊して使えなくて手帳の再交付を申請した時には、手帳を再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강;방화관리자수첩의 서식 그 밖에 방화관리자수첩의 교부·재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④　防火管理者手帳の書式、その他に防火管理者手帳の交付、再交付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消防防災庁長がこれを定めて告示する。

제 4절 방화관리자의 실무교육
第４節　防火管理者の実務教育

제 36 조 (방화관라자의 실무교육 둥) i;협회장은 법 제 4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 화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2 년마다 1 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10 일전까지 실무교육 대상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 36 条(防火管理者の実務教育等) ①　協会長は、法第 41 条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防火管理者に対する実務教育を 2 年ごとに 1 回以上実施するものの、教育日程など教育に必要な計画を樹立して消防防災庁長の承認を得て教育実施 10 日前まで実務教育対象者にこれ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C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실무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화관리자 선임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実務教育が効率的に成り立てるように防火管理者選任および変動事項に対し半期ごとに協会長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37 조 (교육시칸 및 과목) 방화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시간·과목·교육수수료 그 밖에 실무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第 37 条(教育時間および科目)　防火管理者に対する実務教育の時間、科目、教育手数料その他実務教育の実施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消防防災庁長がこれを定めて告示する。

제 38 조 (교육수료 사항의 가재 등) 협회장은 방화관리 실무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 여 방화관리자 수첩 또는 기술자격증에 교육수료사항을 기재하고 직언을 날인하여 교 부하며 별지 제 35 호서식의 실무교육수료자연명부률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第 38 条(教育修了事項の課題等)　協会長は、防火管理実務教育を修了した者に対して防火管理者手帳または技術資格証に教育修了事項を記載して、直言を捺印して交付して別紙第 35 号書式の実務教育修了者名簿を作成して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39 조 (실무교육의 강사)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위 이상의 소방 공무원이나 소방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협회장이 위 촉한다.

第 39 条(実務教育の講師)　実務教育を担当する講師は、科目別で消防員以上の消防公務員や消防または安全管理に関する学識と経験が豊富な者中から協会長が委嘱する。

제 40 조 (방화관리자 둥의 업무정지) (1)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대행자가 법 제 4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 는 법 제 41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 리업무대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정지 및 방화관리자수접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第 40 条(防火管理者等の業務停止)　①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防火管理者または防火管理業務代行者が法第 41 条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実務教育を受けない時には、法第 41 条第 2 項の規定によって実務教育を受ける時まで、防火管理者または防火管理業務代行者に対し、その業務の停止および防火管理者手帳の返却を命じることができる。

2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대행자에 대하여 그 엽무를 정지한 때에는 이를 시·도 공보에 공고하고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화관리자의 경우에는 방화관리자자격수첩에 업무정지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방화관리업무대행자의 경우에는 방화관리엽무를 대행하는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防火管理者または防火管理業務代行者に対し、その業務を停止した時には、これを市・道知事に強固で協会長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場合、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防火管理者の場合には、防火管理者資格手帳に業務停止内容を記載して交付するべきで、防火管理業務代行者の場合には、防火管理業務を代行する防火管理対象物の関係人にその事実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5 장 보칙 補則

제 41 조 (한국소방안전협회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가준 둥) 법 제 45 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소방안전협회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훈은 별표 4 와 같다.

第 41 条(韓国消防安全協会が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施設基準等) 法第 45 条第 5 項の規定によって委託された業務を遂行する韓国消防安全協会が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施設基準は、別表 4 のとおり。

제 42 조 (서식) 파영 제 9 조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서는 별지 제 36 호서식과 같다.

第 42 条(書式) ① 第 9 条第 1 項第 2 号の規定による消防検査からは、別紙第 36 号書式と同じである。

r 짤영 제 3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 37 호서식과 같다‘

② 令第 33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消防施設管理者試験受験願書は、別紙第 37 号書式のとおり。

:핫영 제 33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재직)증병원은 별지 제 38 호서식과 같다.

③ 令第 33 条第 3 項の規定による経歴中兵院は、別紙第 38 号書式のとおり。

4)영 제 3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증·소방시설관리사수첩 및 소방시설 관리사층교부대장은 별지 제 39 호서식 내지 별지 제 41 호서식과 같다.

④ 令第 34 条第 4 項の規定による消防施設管理査証、消防施設管理者手帳および消防施設管理者中交付台帳は、別紙第 39 号書式ないし別紙第 41 号書式のとおり。

제 43 조 (수수료 및 교육벼) 법 제 47 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5 와 같다.

第 43 条(手数料および教育費) 法第 47 条の規定による手数料または教育費は、別表 5 のとおり。

제 44 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 19 조·법 제 28 조 및 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 엽자·소방시설관리사 빛 소방시설관리엽의 둥록의 취소(자격취소를 포함한다).영엽정지 (자격정지를 포함한다) 둥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第 44 条(行政処分の基準) 法第 19 条、法第 28 条および法第 34 条の規定による防炎処理業者、消防施設管理者および消防施設管理業の登録の取消し(資格取り消しを含む。)、業務停止(資格停止を含む。)等と行政処分の基準は、別表 6 のとおり。

부칙 <제 240 호, 2004.7.7>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깐)(다른 법령의 폐지)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방화관리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에 의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실시하는 방화관리업무 및 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을 수료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 한 자로 본다.

여)(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 및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

으로본다.

부직 <제309호, 2005.12.21>

(1)'(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 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CD(*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별표 6 제2호 나목의 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정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5 호, 2006.9.7>
이 영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호, 2006.11.29>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는 2007년 1월 1 일부 터 시행한다.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저11379 호, 2007.3.23>

(1)(시행일) 이 규칙은 2007 년 3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2)(다른 법령의 개정) ſ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볍률 시행규칙」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률 위한 지방자치단체률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7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호, 2008.1.24>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시 첩부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2호의 개 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둥에 대한 동의요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05.12.21, 2006.11.29>

소박시설듀의 자체적컴의 구분 대삿 적겪자의 자격 적겪박별 및 적겪횟수(제 18조관련)

점컴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점검횟수 및 시기
		화낭상		

[별표 2]

과적금의 부과기준(제 27조관련)
課徵金の賦課基準(第 27 条関連)

1. 일반기준

가 영엽정지 1 월은 30 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영업정지기간(일)에 제 2호 나목 규정의 영업정지 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2 이상 발생한 경우 과정금 부과에 의한 영엽정지기간 원)산정은 제 2 호 가목의 개별기준에 의한 각각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라 영엽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정금 부과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감경한 영엽정지기간으로 한다,

마 연간 매출액은 당해 엽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하여 앤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천만원으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과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

(1) 방염처리업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또는 법에 대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19조			
(가) 법 제163':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때			영엽정지3월	
(나)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 신고를 신고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영엽정지3월	
(다)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		영엽정지3	영엽정지3	

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때		월	월
(라) 법 제 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영업정지 월

-4- 비 시 설 ㄴ 피 업

위 반 사항	큰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법 제 25 조제 1항 및 제 2 항의 규정 에 의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결파를 거짓으로 보고한 때	법 제 34조	영업정지이 월	영업정지 6 월	
(나) 법 또는 법에 대한 명령에 위반 한때	법 제 34cî:			
1) 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때			영업정지 3 월	
2) 법 제 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때			영업정지 3 월	
3) 법 제 3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알린 때			영업정지 3 월	
4) 볍 처 114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 거나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영업정지 3 월	영업정지 6 월	

나 과정금 금액 산정기준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 백만원)	영업정지 1 일에 해당되는 금액(단위 : 원)
1	10 이하	25 000

2	10 초과 - 30 이하	30 000
3	30 초과 - 50 이하	35 000
4	50 초과 - 100 이하	45,000
5	100 초과 - 150 이하	50 000
6	150 초과 - 200 이하	55 000
7	200 초과 - 250 이하	65,000
8	250 초과 - 300 이하	80 000
9	300 초과 - 350 이하	95 000
10	350 초과 - 400 이하	110,000
11	400 초과 - 450 이하	125 000
12	450 초과 - 500 이하	140 000
13	500 초과 - 750 이하	160,000
14	750 초과 - 1,000 이하	180 000
15	1씨00 초과 - 2 500 이하	210,000
16	2,500 초과 - 5,000 이하	240,000
17	5,000 초과 - 7 500 이하	270,000
18	7,500 초과 - 10 000 이하	300,000
19	10 000 초과	330,000

[별표 3]

깎습교육 과목 및 시까(32 조관련)

1. 1급 방화관리업무 강습과목 및 시간

7J 탺, 3I}		시 간
가.소방관계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령)		4
나. 연소 및 소화이론		2
다. 건축 · 전기 및 가ㅅ관계법령		2
라. 응급처치 요령		
마, 위험물 실무	(1) 위험물의 성상 (2) 위험물의 안전관리 (3) 위험물의 화재 현상 및 소화방법	2
t|}. ᆺl=lJ- 、1-「	(1)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3)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 μ)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 (5) 전기 및 가ㅅ안전관리 (6) 방화관리제도 ·소방계획 및 소방훈련 (η 종합방재실의 운용 (8)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1 4 3 3 2 2 7
사. 그 밖의 과목	실기실습	6
계		40

2.2 급 방화관리엽무 강습과목 및 시간

강습과목		시간
가. 소방학개론		2
나. 소방관계법령 및 정책방향		3
다. 응급처치 요령		1
라. 전기 및 가〈관련 안전관리		
마.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1
바.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4
사. 방염기준 및 방염대상물품		1
。}$"JÆ1-「	(1) 소방계획의 수립 (2) 자위소방훈련 및 현장지휘능력 (3) 소방시설의 점컴	2 2 7
자. 그 밖의 과목	(1) 소방안전교육 요령 (2) 실기실습	7
계		32

[별표 4]

하국소박아척혁회가 갖추어야 하는 시섭기주(제 41 조관련)

1. 사무실 : 바닥면적 60 제곱미터 이상일 것
2 강의실 : 바닥면적 100 제곱마터 이상이고 의자 ·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3. 실습·실험실 : 바닥면적 100 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교육용기자재

구분	교육용기자재
그Z 토흔	1. 액정비전 1개 2 환등기(OHP) 1개(λ 크린 포함) 3. 텔레비전 1대 4. 비디오 셋트 1대 5. 슬라이드 1개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기관	1. 소화기(단면절개) : 3 종 3 대 2 정보설비시λ템 1개 3. 〈효링를러모형 1개 4. 자동화재탐지설비 셋ㅌ 1개 5. 소화설비 계통도 1개 6. 소화기 시율레이터 및 소화기 충전장치 1개 7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18죠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점컴기구 각 때 엠화관리자 교육기관에 한함) 8. 위험물저장 ·취급시설 계통도 17R f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기관에 한함) 9.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 l'묘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기관에 한함) 각 1개

[별표 5] <개정 2006.11.29>

수수료 및 교육비(제 43 조관련)

1. 수수료

납부대상자	납부금액
가 법 제14조저n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엽의 등록을 하그1자 하는 자	4 만원
나. 법 제 14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	1만원
다 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2 만원
라. 법 제17조저β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2 만원
마 법 제 26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1만원
바 법 제29조저β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4 만원
사 법 제 29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의 통록증 또는 동록수칩을	1만원
아 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엽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자	2 만원
자 법 제32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엽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2 만원
차 영 제 23조제 1항제 6호 내지 제 8호 및 동조제행제똥 내지 제 1효의 빼 해당하	1 만원
카. 방화관리자수첩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	1만원

※ 납부방법

가목 내지 라목 및 바목 내지 자목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마목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차목 및 카목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교육비

납부 대상자	납부금액
가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대한 방화관리업무강습 맞 콩콩기관방화관리강습교육을 받 려는 자	12 만원
나 2 급 방화관리대상물에 관한 방화관리업무장습을 받오려는 자	9 만6 전원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ㅣ 제2&조제 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강습교융을 받 은 자로서 법 제41조제 1항에 따라 2 급 방화관리업무 강습을 받으려는 자	7 만2 천원

※ 납부방법

교육비는 계좌입금의 방식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별표 6] <개정 2008.1.24>

핵첫처분기준(제 44 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동시에 2 이상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 줍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되 ,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용의 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다

나‘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 처분기간중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의한 영엽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처분할수 있다

(1) 고의·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다만 반복적 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다읍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微水)반경에 미달되는 경우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2 개 이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다) 유도등(젊導뚫)이 일시적으로 점등(點):8')되지 않는 경우 (라) 유도표지(꿇현標識)가 탈락된 경우

마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 기준중 유사한 사항에 의하여 처분한다.

2 개별기준

가 방염엽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큰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 차	3 차
(1) 거짓 그 밖익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한때	법 제 19조	등록취소		
(2)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저111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엽정지 3 월	Ti「료」iij1까」、
(3) 법 제 12조 각호의 1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법 저1119조	쇠j「료「츠 1 ←」		

(4) 법 제 18조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둥록증 또는 둥록수칩을 벌려준 때	법 제 19조	영업정지 6 월	등록취소
(5)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랜이 제 19조 지날 때가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때	법	경고 (시정명령)	
(6) 법 제 18 조제 4 항을 위반하여 방염 처리물품을 방염성능기준에 미달 되게 방염처리 한 때	법 제 19조	영엽정지 3 월	영엽정지 6 월 등록취소

	법 제 19조		
(끼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경 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 웍	등록취소
(가) 법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때	경 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 월	등록취소
(나) 법 제 17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하지 아니하거 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때	경 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 월	등록취소
(다) 법 제 18 조제 3 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알려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알린 때	영업정지 3 월	영업정지 6 월	등록취소
(라) 법 제 4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 하거나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영엽정지 3 월	영엽정지 6	등록취소
(마) 볍 저 114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나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 차	3 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벱으로 시험에 합격한 때	법 제 28 조	자격취소		
(2) 법 제 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때	법 제 28 조	자격정지 6 월	자격정지 2 년	자격취소
(3) 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점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법 제 28 조	자격정지 6 월	자격정지 I 년	자격취소
(4) 법 제 2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때	법 제 28 조	자격취소		
(5) 법 제 2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엽체에 취업한때	법 제 28 조	자격취소		
(6) 법 제 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된때	법 제 28 조	자격취소		
(끼 볍 제 4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때	법 제 28 조	자격정지 6 월	자격정지 2 년	자격취소
(8)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 46죠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볍 저1128조	자격정지 6 월	자격정지 1 년	자격취소
(9)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볍 저1128조	자격정지 6 월	자격정지 1 년	자격취소

다. 소방시설관리엽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1) 거짓 그 밖익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한때	법 제 34 조	등록취소		
(2) 법 제 25조제 1항 및 제 쟁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캠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때	법 제 34 조	정고 (시정명령)	영엽정지 6 월	둥록취소

β)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34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4) 법 제30조 각호의 1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법 제34조	등록취소		
(5)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벌려준 때	법 제34조	등록취소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34조			
(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나)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때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다)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알린 때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라)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때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illegible]
(마)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별지 제 1 호서식]

제 호

개 수 명 령 서

수 령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		
개수명령대상	④대 상			
	⑤위 치			
	⑥소유자.관리자.점유자구분			
개수명령구분	⑦사 유			
	⑧내 용			
	⑨방 법			
	⑩기 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5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2 조제 1 항의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개수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소방본부장(소방서장)

210 ㎜×297 ㎜(일반용 60g/㎡(재활용품))
지

[별지
제 2 호서식]

개 수 명 령 대 장

① 순번	②건물명 (업체명)	③주 소	④수령인 (대표자)	⑤개수명령의 내 용	⑥개수명령 기 간	⑦ 확 인	⑧ 비 고

210 ㎜×297 ㎜(보존용지(2 종) 70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7.12.13>

손실보상청구서

(개수명령 제 호)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손 실 개 요	④ 손 실 내 용			
	⑤ 손 실 액			
	⑥손실액산출기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수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청구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관리대장은 제외한다) 2.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그 밖의 증빙자료	건축물관리대장(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 4 호서식]

손실보상합의서	
①손실보상청구금액	
②손실보상사정금액	
③손실보상합의금액	
④합 의 내 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개수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개수명령자

소 속

직 급

성 명

210 ㎜×297 ㎜ 60g/㎡(재활용품))
(일반용지

[별지 제 5 호서식]

건축허가등의동의대장			
①동의(사용승인)번호	제 호	②동의(사용승인)일	
③건축물명(업체명)		④전 화 번 호	
⑤대표자(건축주)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건축규모	조, 지붕, 지하 층/지상 층 대지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⑨설계업체명(대표자)		⑩설 계 기 간	
⑪감리업체명(대표자)		⑫감 리 기 간	
⑬시공업체명(대표자)		⑭시 공 기 간	
⑮소 방 시 설 내 용			

건축물의 변동사항

연 월 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기록	비고

210 ㎜×297 ㎜(보존용지(1 종) 70g/㎡)

[별지 제 6 호서식] <2007.3.23>
삭제 [별지 제 7 호서식] <2007.3.23>
삭제 [별지 제 8 호서식] <2007.3.23>
삭제

[별지 제 9 호서식] 2006.9.7> (앞 쪽)

<개정

<table>
<tr><td colspan="5">방염처리업등록신청서</td><td>처리기간
30 일</td></tr>
<tr><td rowspan="2">신 청 인</td><td>①성명(기관 또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td><td></td><td>②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③주 소</td><td colspan="4">(전화 :)</td></tr>
<tr><td rowspan="2">영 업 소</td><td>④상호(명칭)</td><td colspan="4"></td></tr>
<tr><td>⑤소 재 지</td><td colspan="4">(전화 :)</td></tr>
<tr><td rowspan="3">임 원
(감사포함)</td><td>⑥성 명</td><td colspan="4"></td></tr>
<tr><td></td><td colspan="4"></td></tr>
<tr><td></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⑦신 청 업 종</td><td></td><td>⑧분 야</td><td colspan="2">□섬 유 류 방 염 처 리 업
□합 성 수 지 류 방 염 처 리 업
□ 합 판 · 목 재 류 방 염 처 리 업</td></tr>
<tr><td colspan="2">⑨자본금 또는 자산액</td><td></td><td>⑩기 술 인 력</td><td colspan="2">명</td></tr>
<tr><td colspan="2">⑪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 등</td><td></td><td>⑫등 록 번 호</td><td colspan="2"></td></tr>
</table>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4 조제 3 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8 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방염처리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10 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	법인등기부 등본 1 부	4 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재요령

○임 원 : 법인의 경우에 해당하며 대표자 외의 임원(감사를 포함합니다)의 이름을 기재하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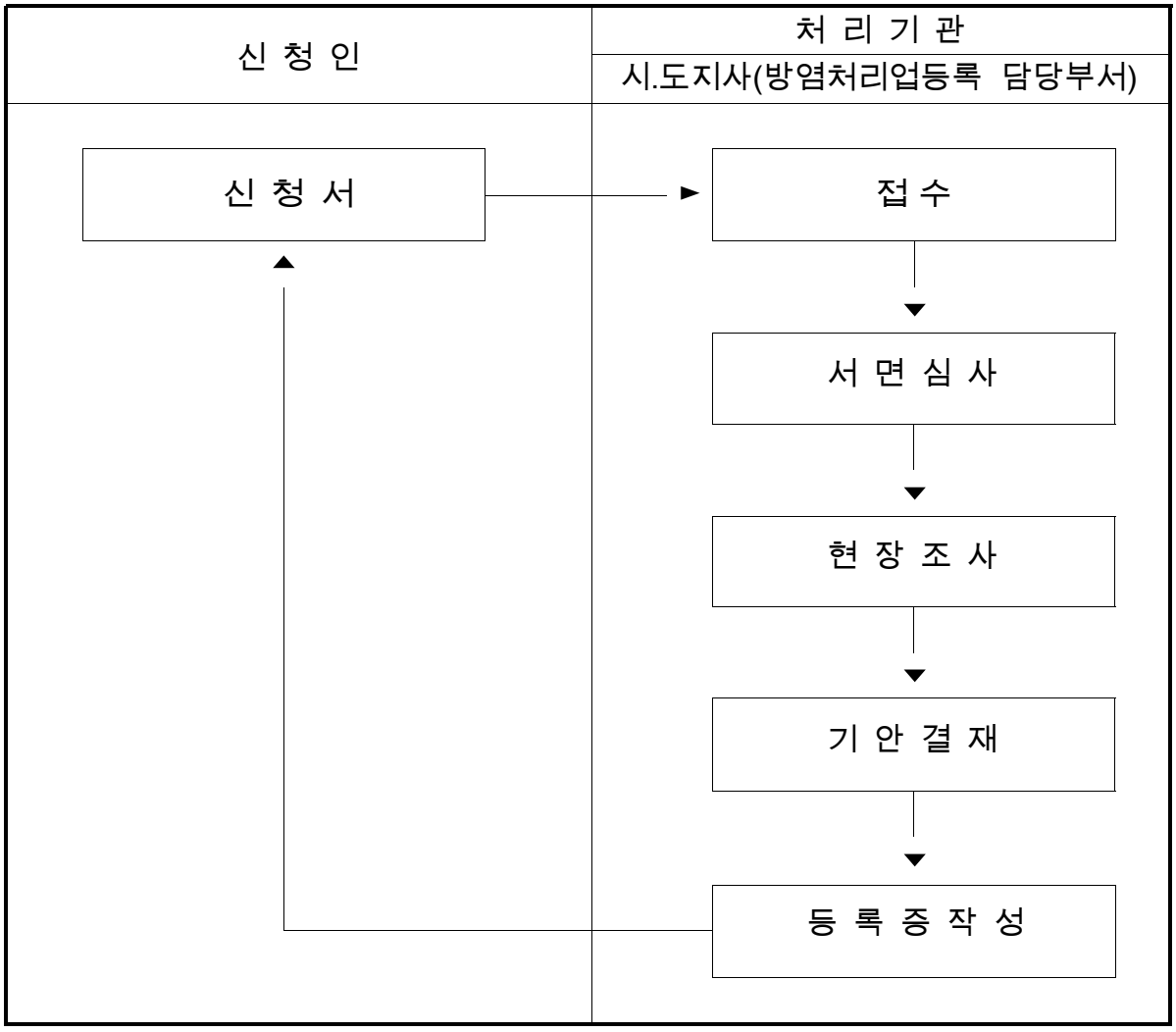

[별지 제 10 호서식]

소방기술인력연명부

① 연번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자격종목	⑤ 자격증(수첩)번호	⑥ 주 소 지	⑦ 비 고

210 ㎜×297 ㎜(보존용지(1 종) 70g/㎡)

[별지 제 11 호서식]

제 호

방염처리업등록증

업 종 :

상호(명칭) :

대 표 자 : 생년월일 :

영업소소재지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210 ㎜×297 ㎜(보존용지(1 종) 120g/㎡)

[별지 제 12 호서식]

방염처리업등록수첩

시 .도

80 ㎜×130 ㎜(보존용지(1 종) 120g/㎡)

(제 1 쪽)

방염처리업등록수첩			
업 종 별		등 록 번 호	제 호
상 호(명 칭)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영 업 소 소 재 지			
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 등			
자본금 또는 자산액			백만원
위와 같이 등록되었습니다. 년 월 일 시 .도 지사			

80 ㎜×130 ㎜(보존용지(1 종) 120g/㎡)

※ 자본금 또는 자산액은 기재를 요청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보유기술자명단					
기 술 인 력					
자격증(자격수첩)번호	성 명	자격증(자격수첩)번호	성 명	자격증(자격수첩)번호	성 명

변 경 사 항			
변 경 일 자	변 경 구 분	변 경 사 항	확 인
비 고			

기술자현장근무사항(후처리에 한합니다)						
자격구분	자 격 증 (자격수첩) 번 호	성 명	기술인력	현 장 명	현장배치 기 간	발 주 처 확 인

[별지 제 13 호서식] (앞 쪽)

방염처리업등록대장			
등 록 번 호	제 호	등 록 연 월 일	
상 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영 업 소 소 재 지			
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			

자본금(자본금의 기재를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연 도	실 질 자 본 금	진 단 연 월 일	진 단 기 관
시 험 실 면 적			

기 술 인 력					
자격증(자격수첩)번호	성 명	자격증(자격수첩)번호	성 명	자격증(자격수첩)번호	성 명

210 ㎜×297 ㎜(보존용지(1 종) 120g/㎡)

(뒤 쪽)

기 재 사 항 변 경				
변경연월일	변 경 구 분	변 경 사 항	기 록	비 고

행정처분사항(과태료 부과사항 기재)			
처 분 일 자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비 고

210 ㎜×297 ㎜(보존용지(1 종) 120g/㎡)

[별지 제 14 호서식] (앞 쪽)

<table>
<tr><td colspan="5">방염처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td><td>처리기간
3 일</td></tr>
<tr><td rowspan="2">신 청 인</td><td>①상 호</td><td></td><td>②전 화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③대표자</td><td></td><td>④영업소소재지</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⑤등 록 번 호</td><td></td><td>⑥등 록 일 자</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⑦업 종</td><td></td><td>⑧분 야</td><td colspan="2">□ 섬유류방염처리업
□ 합성수지류방염처리업
□ 합판.목재류방염처리업</td></tr>
<tr><td colspan="2">⑨재교부신청종류</td><td colspan="4">□ 방염처리업등록증, □ 방염처리업등록수첩</td></tr>
<tr><td colspan="2">⑩재교부신청사유</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6">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3 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등록증(등록수첩)을 재교부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td></tr>
<tr><td colspan="5">구비서류 :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신청하는 경우에는 못쓰게 된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방염처리업등록수첩</td><td>수수료
1 만원</td></tr>
</table>

210 ㎜×297 ㎜ 60g/㎡(재활용품))
(일반용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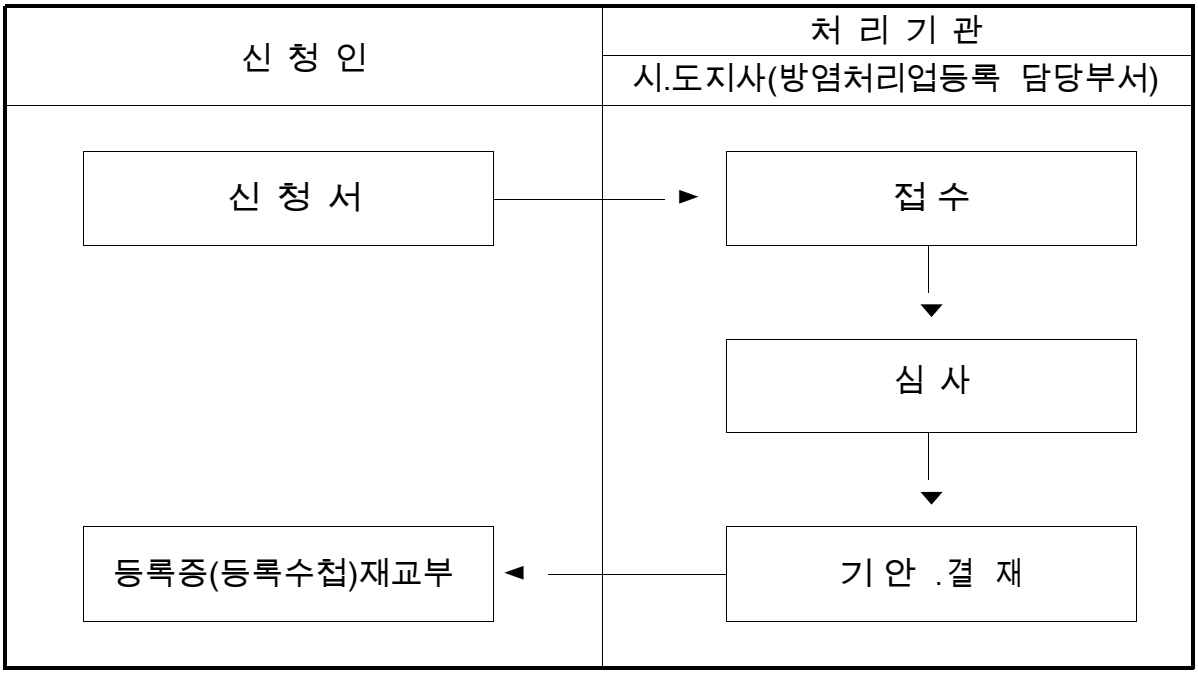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방염처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 일
신고인	① 업 종		② 등 록 번 호	제 호	
	③ 상 호		④ 전 화 번 호		
	⑤ 대 표 자		⑥주민등록번호		
	⑦영 업 소 소 재 지				

변 경 내 용				
⑧변경구분	⑨변경일자	⑩변경후사항	⑪변경전사항	비 고

	수수료
	2만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방염처리업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변경사항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방염처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1부)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사본 1부)
	대 표 자	방염처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1부)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사본 1부)
	기 술 인 력	1. 방염처리업등록수첩 2. 자격수첩 또는 변경된 기술인력의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재요령

○변경내용 : 변경된 내용이 대표자인 경우에는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210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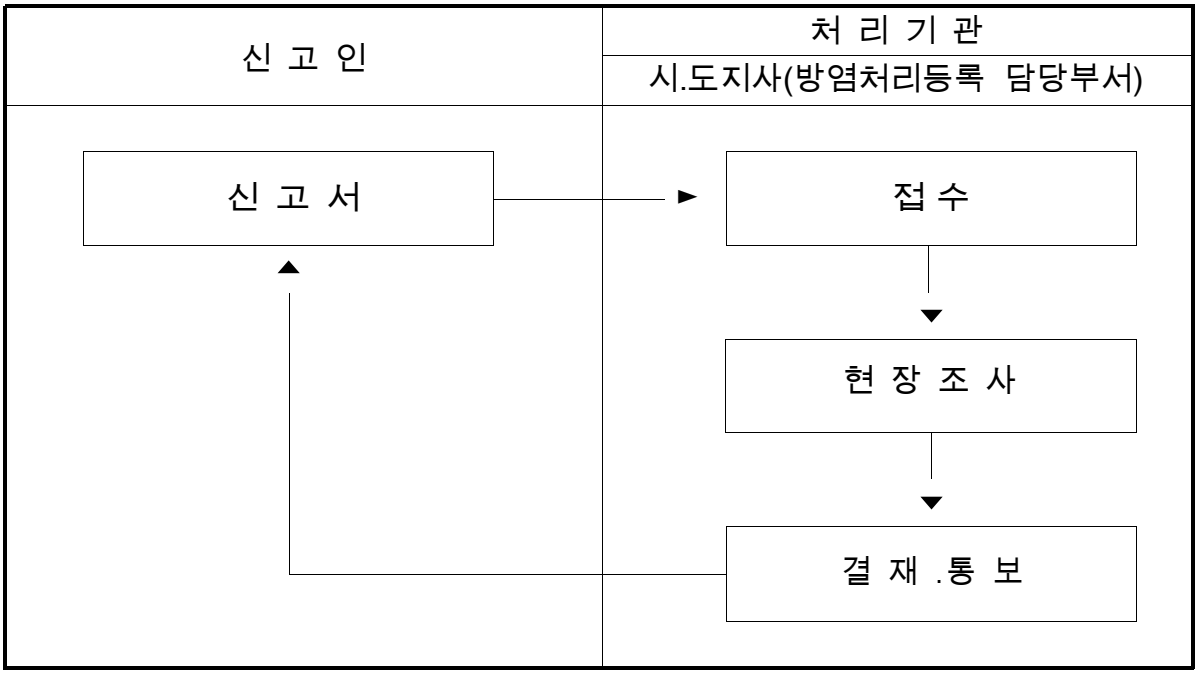

[별지 제 16 호서식] 2006.9.7> (앞 쪽)

<개정

<table>
<tr><td colspan="6">방염처리업지위승계신고서</td><td>처리기간
14 일</td></tr>
<tr><td rowspan="6">지위승계인
(양도·양수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td><td>①업 종</td><td></td><td>②등록번호</td><td>제 호</td><td>③등록일자</td><td></td></tr>
<tr><td>④상 호(명 칭)</td><td></td><td>⑤대 표 자</td><td></td><td>⑥주 민 등 록 번 호</td><td></td></tr>
<tr><td>⑦주 소</td><td colspan="5">(전화 :)</td></tr>
<tr><td>⑧영업소소재지</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⑨임 원
(감 사 포 함)</td><td>성 명</td><td></td><td>성 명</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지위양도인
(양도·양수전의 법인)</td><td>⑩상 호(명 칭)</td><td></td><td>⑪대 표 자</td><td></td><td>⑫주 민 등 록 번 호</td><td></td></tr>
<tr><td>⑬주 소</td><td colspan="5">(전화 :)</td></tr>
<tr><td>승 계 사 유</td><td colspan="6"></td></tr>
</table>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7 조제 3 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3 조제 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염처리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table>
<tr><td rowspan="2">구비서류</td><td>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td><td>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td><td>수 수 료</td></tr>
<tr><td>1.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 부
3. 별지 제 10 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
증(자격수첩) 및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 2 호 나목에 따른 방염처리시설 및</td><td>1. 상속인의 호적 등본(상속의 경우에 한합니다) 1 부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부 등본(법인 합병의 경우에 한합니다) 1 부</td><td>2 만원</td></tr>
</tabl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재요령

○임 원 : 법인(양도인을 제외합니다)의 경우 지위승계당시 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표자 외의 임원의 이름을 기재하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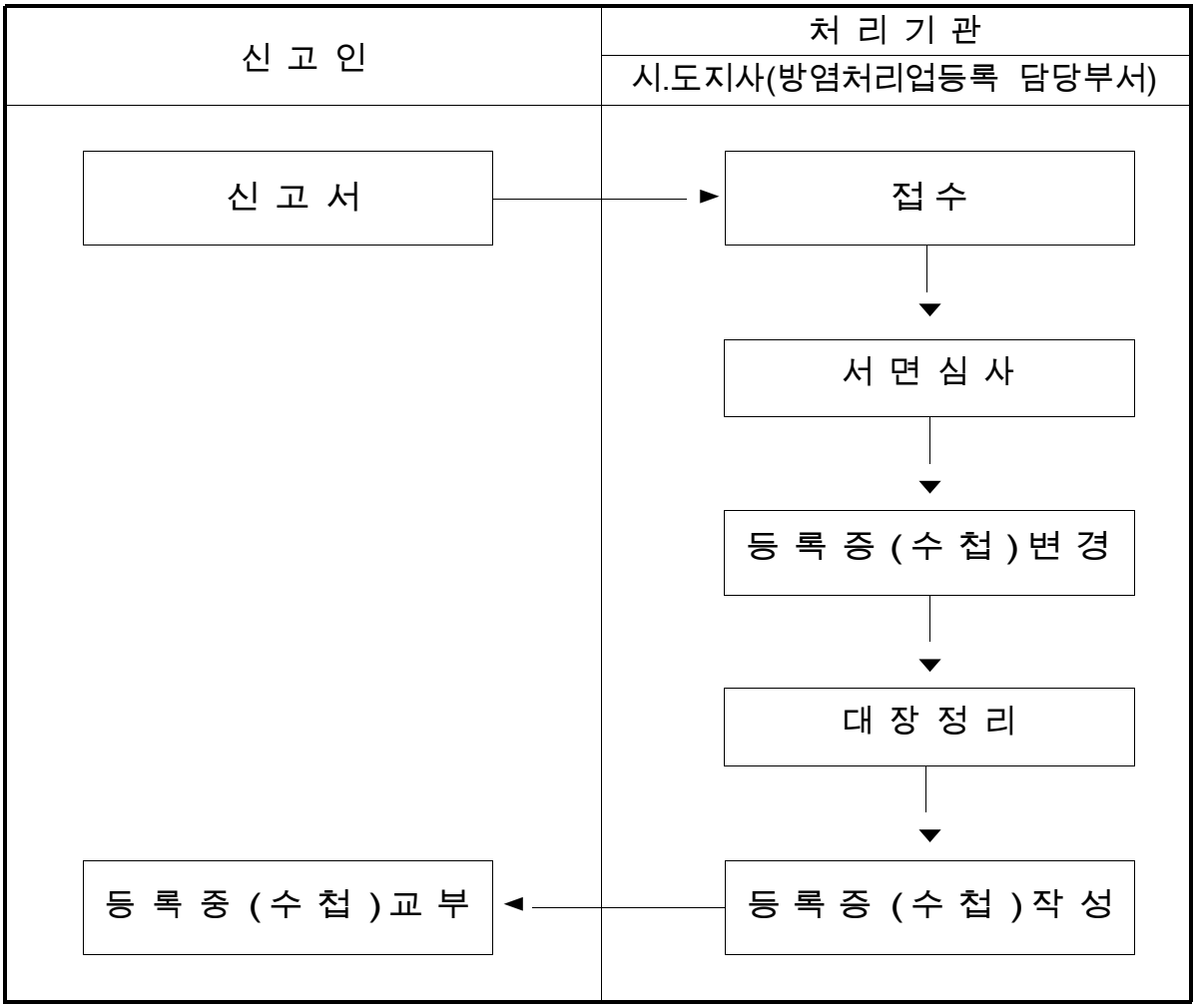

[별지 제 17 호서식] 2006.9.7>

<개정

<table>
<tr><td colspan="7">방염처리업합병신고서</td><td>처리기간
14 일</td></tr>
<tr><td rowspan="8">신고인</td><td rowspan="4">합병되는 법인</td><td>①업 종</td><td></td><td>②등 록 번 호</td><td>제 호</td><td>③등록일자</td><td colspan="2"></td></tr>
<tr><td>④상 호
(명 칭)</td><td></td><td>⑤대 표 자</td><td></td><td>⑥주민등록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⑦주 소</td><td colspan="6"></td></tr>
<tr><td>⑧영 업 소 소 재 지</td><td colspan="6">(전화 :)</td></tr>
<tr><td rowspan="4">합병하는 법인</td><td>⑨업 종</td><td></td><td>⑩등 록 번 호</td><td>제 호</td><td>⑪등록일자</td><td colspan="2"></td></tr>
<tr><td>⑫상 호
(명 칭)</td><td></td><td>⑬대 표 자</td><td></td><td>⑭주민등록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⑮주 소</td><td colspan="6"></td></tr>
<tr><td><16>영 업 소 소 재 지</td><td colspan="6">(전화 :)</td></tr>
<tr><td rowspan="4">합 병 후 존 속 또 는 설 립 되 는 법 인</td><td><17>업 종</td><td></td><td><18>등록번호</td><td>제 호</td><td><19>등록일자</td><td colspan="2"></td></tr>
<tr><td><20>상 호
(명 칭)</td><td></td><td><21>대 표 자</td><td></td><td><2 >주민등록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23>주 소</td><td colspan="6"></td></tr>
<tr><td><24>영 업 소 소 재 지</td><td colspan="6">(전화 :)</td></tr>
<tr><td rowspan="4">임 원
(감 사 포 함)</td><td><25>성 명</td><td colspan="6"></td></tr>
<tr><td></td><td colspan="6"></td></tr>
<tr><td></td><td colspan="6"></td></tr>
<tr><td></td><td colspan="6"></td></tr>
</table>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7 조제 3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3 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방염처리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table>
<tr><td rowspan="2">구비서류</td><td>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td><td>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td><td>수 수 료</td></tr>
<tr><td>1.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1 부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10 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
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 2 호 나목에 따른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td><td>법인등기부 등본 1 부</td><td>2 만원</td></tr>
</tabl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재요령

○임 원 : 법인(피합병인을 제외합니다)의 경우에 지위승계당시 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표자 외의 임원의 이름을 기재하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별지 제 18 호서식]

<table>
<tr><td colspan="5">2 급방화관리자선임연기신청서</td><td>처리기한
3 일</td></tr>
<tr><td rowspan="4">방 화 관 리
소방대상물</td><td>상호(명칭)</td><td colspan="2"></td><td>용도구분</td><td></td></tr>
<tr><td>소 재 지</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구 조</td><td colspan="4">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동</td></tr>
<tr><td>사용승인일</td><td>. . .</td><td>선 임 구 분</td><td colspan="2">신축, 증축, 소유권변경,
용도변경, 해임</td></tr>
<tr><td rowspan="5">방화관리업무
강습교육접수
자 또는 방화
관리자 자격
시험응시자
(선임예정자)</td><td>성 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직 위</td><td colspan="4"></td></tr>
<tr><td>교육접수/
응시접수</td><td>. . ./ . . .</td><td colspan="2">접수번호/
응시번호</td><td>/</td></tr>
<tr><td>강습기간/
자격시험일</td><td colspan="4">. . . ~ . . . /</td></tr>
<tr><td colspan="2">그 밖의 필요한 사항</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14 조제 3 항의 규 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선임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td><td>수수료
없 음</td></tr>
<tr><td>구비서류</td><td colspan="5">2 급 방화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 급
방화관리자시험응시</td></tr>
</table>

210 ㎜×297 ㎜ 60g/㎡(재활용품))
(일반용지

[별지 서119호서삭 1 (앞 혐

방화관려지선인신고서				끼리기'4}
방화관리 대 상 불	상 호(성 병)	(-용I 뉘분	방화관리지 -" ㅂ	ロ1급 디2 급
	←、 재 지			(저화
	f :{-_	지하 ò 지상 τ" 인떤지 11 바낙먼지 m		
방화관지 / 선 Ul	성 [영		주민-o 팍번호	
	Ŧl ≥、			(진화
	직		선 임 역 샤	
	빙 회 관 비 자 수첩 변 호 잇 피 부 일 자	제1 즈L 년 일 익	빙화관리샤 수 첩 취 득 자 처 f 분	
	ᵼB 퀴「 (총 선 엮 시 간)		최종교육일지	닌 월 일
iill oEl	성 며。		수민동 ; 빈호	
	Ŧl ≥、			(진화
	방화관리지 수 섬 맨호 및 피 부 일 자	지11 효ζ 년 일 익	방화관라지 4- 뱌3 4-l 자 처 f 분	
	ᵼl1 인 샤		해 엮 사 유	
' -f 21 필요 한 사항				

소박시설설치유지 및 안천관리에 관한 멤릅」 저120::c저14향 제 21,{c 및 같은 멤 시행규시 제 14조재5 항에 때라 빙회관펴샤듀 선엮바였기에 이에 선고합니냐

니 월 。ᄔ

신끄인 (서명 또는 인)

소방서상 꺼하

←난 비 서 l;-	선고이 지]추서 -r-i-	팀딩 꽁무워 화이사항 (담당 꽁무윈의 획연이1 풍의하지 아니하는 정우 신고인이 직강 세출하여。1 하는 서듀)	)ιr- 「ㄴ
	?		없 음
	3		
	4		
	J		

복이은 이 건 엽부지<'l와 관랜하여 l진사정부→볍l 지1121조기U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동하여 팀딩 콩우워。1 위의 팀딩 공무원 화이사항을 확이하는 갓에 동으1합니냐

선 JL연 (서냄 또는 연)

비 JL : 깐밤시섣설치유 "1 맛 안선관리에 관한 법릉」 서11O조세3행에 따피 직뷔를 지깅히여 선 임하논 경우에는 성병란에 식위명갚 기입하끄 직위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21Ommx297mm(일반용지 60밍m' (재활용품))

(뒤 쪽)

공동으로 선임된 방화관리대상물 현황			
방화관리대상물명칭		방화관리등급	□ 1 급 □ 2 급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건 물 규 모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동		
방화관리대상물명칭		방화관리등급	□ 1 급 □ 2 급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건 물 규 모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동		
방화관리대상물명칭		방화관리등급	□ 1 급 □ 2 급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건 물 규 모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동		
공동으로 선임된 방화관리대상물의 위치도			

[별지 제 20 호서식]

<table>
<tr><td colspan="6">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

작성연월일 : . . .</td></tr>
<tr><td rowspan="3">소방대상물</td><td>상 호(명 칭)</td><td></td><td>방화관리등급</td><td colspan="2">□1 급 □2 급</td></tr>
<tr><td>소 재 지</td><td colspan="4">(전화 :)</td></tr>
<tr><td>구 조</td><td colspan="4">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td></tr>
<tr><td rowspan="2">관 계 인</td><td>성 명 (기 관 또는 법인명)</td><td colspan="4">(서명 또는 인)</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방화관리자</td><td>성 명</td><td></td><td>선 임 일 자</td><td colspan="2"></td></tr>
<tr><td>직 위</td><td></td><td>자 격 구 분</td><td colspan="2">□1 급 □2 급</td></tr>
<tr><td colspan="2">훈 련 .교 육 일 지</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훈 련 . 교 육 구 분</td><td colspan="2">□자체훈련 □합동훈련</td><td>교 육 구 분</td><td>□자체교육
□그 밖의 교육</td></tr>
<tr><td colspan="2">훈 련 통 제 관</td><td colspan="2">(서명 또는 인)</td><td>교 관</td><td>(서명 또는 인)</td></tr>
<tr><td colspan="2">교 육 교 관</td><td colspan="4">(서명 또는 인)</td></tr>
<tr><td colspan="6">훈 련 .교 육 실 시 사 항</td></tr>
<tr><td colspan="6">작성요령
•훈련통제관 : 소방기관과의 합동훈련시 소방대원의 지휘관을 기재합니다.
•훈련.교육실시사항 : 훈련.교육의 일시.장소.대상인원 및 내용의 개요를 기재 합니다.</td></tr>
</table>

[별지 제 21 호서식] (앞 쪽)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

수 신

발 신

아래와 같이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소 방 대상물	소 재 지	
	명 칭	
	용 도	
	건물구조	조 지붕 /층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점 검 기 간		
소방시설등의 종류		
특 기 사 항		

점검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붙 임 : 소방시설등점검표 1 부. 끝.

210 ㎜×297 ㎜ 60g/㎡(재활용품))

(일반용지

(뒤 쪽)

점검결과지적내역서			
①소방대상물상호(명칭)		②소유자	
③소방대상물의 위치			
④점 검 결 과			
⑤점검자(직위 및 성명)			
⑥각 설비별 점검결과			
소 방 기 구			
경 보 설 비			
소 화 설 비			
피 난 설 비			
소 화 용 수 설 비			
소 화 활 동 설 비			
화 재 취 약 시 설			
그 밖의 소방시설등			

[별지 제 22 호서식] 2006.9.7> (앞 쪽)

<개정

<table>
<tr><td colspan="4">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td><td>처리기간
30 일</td></tr>
<tr><td rowspan="3">신 청 인</td><td>①상호 또는 명칭</td><td></td><td>②전 화 번 호</td><td></td></tr>
<tr><td>③성 명(법인 또는 기 관 명)</td><td colspan="3"></td></tr>
<tr><td>④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⑤영 업 소 소 재 지</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4">⑥대표자 및 임 원</td><td>성 명</td><td colspan="3">주 소</td></tr>
<tr><td></td><td colspan="3"></td></tr>
<tr><td></td><td colspan="3"></td></tr>
<tr><td></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⑦소 방 시 설 관 리 사</td><td colspan="3">명</td></tr>
<tr><td colspan="2">⑧이미 취득한 다른 업종면허</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9 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21 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시·도지사 귀하</td></tr>
<tr><td rowspan="2">구 비 서 류</td><td>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td><td>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td><td colspan="2">수 수 료</td></tr>
<tr><td>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23 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기술자격증(자 격수첩)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 2 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명세서 1 부</td><td>법인등기부 등본 1 부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td><td colspan="2">4 만원</td></tr>
<tr><td colspan="5">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td></tr>
</tabl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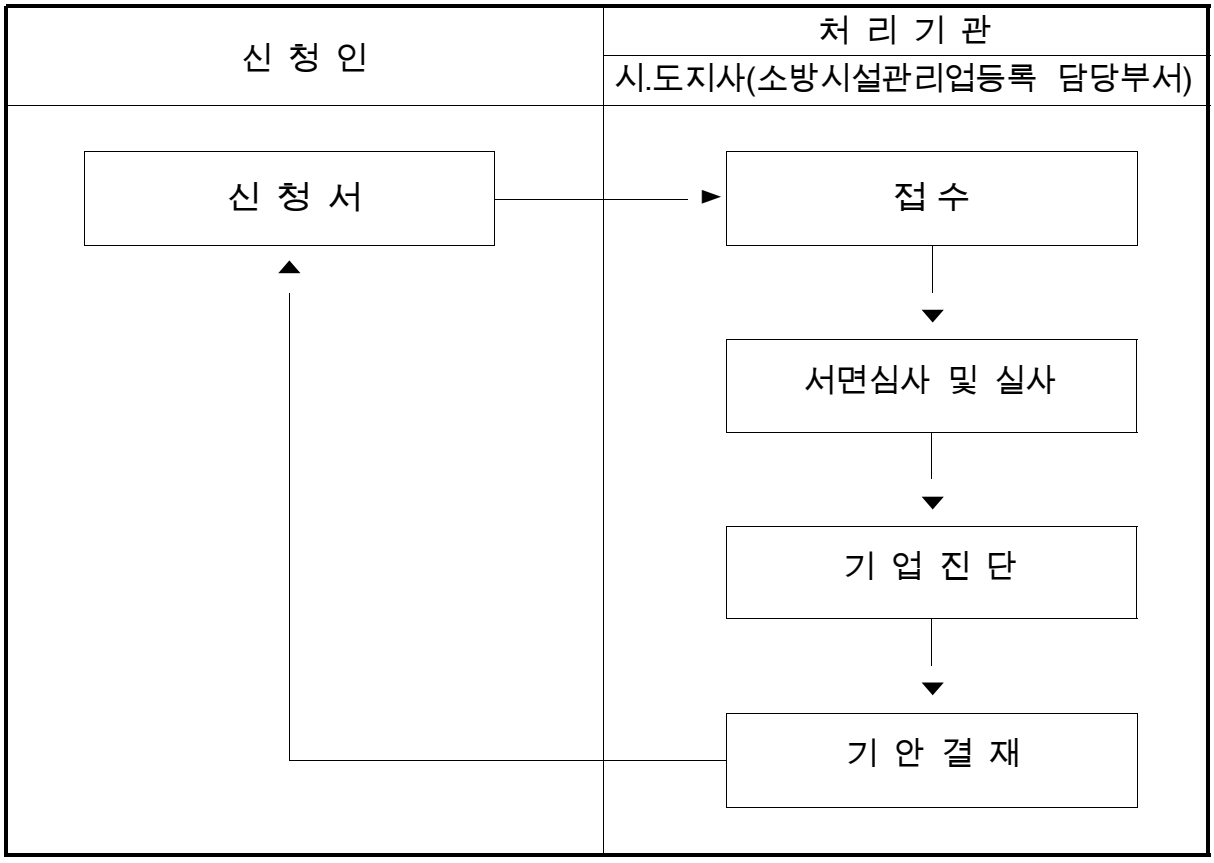

[별지 제 23 호서식]

소방기술인력연명부						
연번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자격증번호 (자격종목)	주 소 지	비 고

비 고

구분란에는 주된 기술인력 또는 보조 기술인력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210 ㎜×297 ㎜(보존용지(1 종) 70g/㎡)

[별지
제 24 호서식]

제 호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상호(명칭) :
대 표 자 : 생년월일 :
영업소소재지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29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210 ㎜×297 ㎜(보존용지(1 종) 120g/㎡)

[별지 제 25 호서식] (표 지)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시 .도

80 ㎜×130 ㎜(보존용지(1 종) 120g/㎡)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상 호(명 칭)		등 록 번 호	제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영업소소재지			
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			

위와 같이 등록되었습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80 ㎜×130 ㎜(보존용지(1 종) 120g/㎡)

보유기술자명단					
주 된 기 술 인 력		보 조 기 술 인 력		보 조 기 술 인 력	
기술자격증 번 호	성 명	기술자격증 번 호	성 명	기술자격증 번 호	성 명

변 경 사 항			
변 경 연 월 일	변 경 구 분	변 경 된 내 용	확 인
비 고			

기술자현장근무사항						
자 격 구 분	자격수첩 번 호	성 명	발 주 처 명	현 장 명	현장점검 기 간	발 주 처 확 인

[별지 제 26 호서식] (앞 쪽)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			
등 록 번 호	제 호	등 록 연 월 일	
상 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영 업 소 소 재 지			
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			

소방기술자보유현황					
주 된 기 술 인 력		보 조 기 술 인 력		보 조 기 술 인 력	
기술자격증번호	성 명	기술자격증번호	성 명	기술자격증번호	성 명

210 ㎜×297 ㎜(보존용지(1 종) 120g/㎡)

(뒤 쪽)

기 재 사 항 변 경				
변경연월일	변 경 구 분	변 경 사 항	기록	비 고

행 정 처 분 사 항			
처 분 일 자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비 고

[별지 제 27 호서식] (앞 쪽)

<table>
<tr><td colspan="4">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td><td>처리기간
3 일</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①상 호</td><td></td><td>②전 화 번 호</td><td></td></tr>
<tr><td>③대 표 자</td><td></td><td>④영업소소재지</td><td></td></tr>
<tr><td colspan="2">⑤등 록 번 호</td><td></td><td>⑥등 록 일 자</td><td></td></tr>
<tr><td colspan="2">⑦재교부신청종류</td><td colspan="3">□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td></tr>
<tr><td colspan="2">⑧재교부신청사유</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29 조제 3 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23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수첩)을 재교부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시.도지사 귀하</td></tr>
<tr><td colspan="4">구비서류 :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신청하는 경우에는 못쓰게 된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td><td>수수료
1 만원</td></tr>
</table>

210 ㎜×297 ㎜ 60g/㎡(재활용품))
(일반용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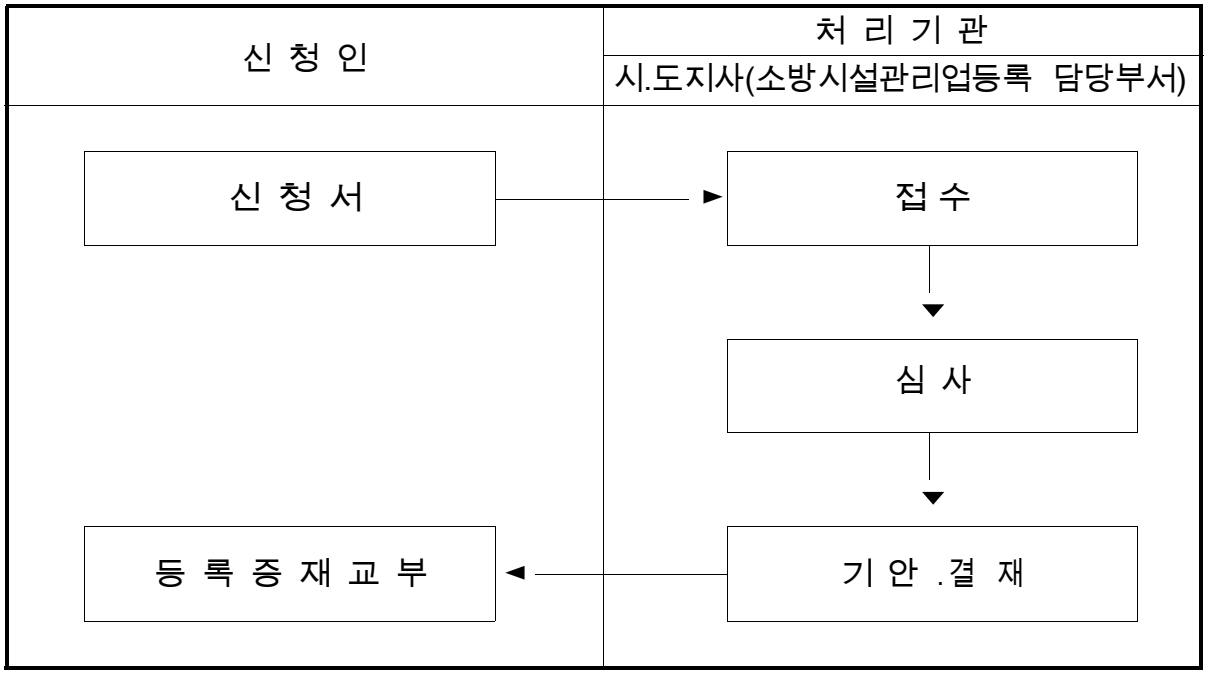

[별지 제 28 호서식] 2006.9.7, 2006.11.29>

<개정 (앞 쪽)

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 일
신 고 인	①상호 또는 명칭		②전화번호	
	③성명(법인 또는 기관명)			
④신 고 사 항	□ 명칭 또는 상호 변경 □ 영업소소재지 변경 □ 기술인력변경 □ 대표자 변경			

⑤변경일자					
변경내용	구 분	⑥명칭 또는 상호	⑦영업소소재지	⑧기술인력	⑨대표자 변경
	변경전				
	변경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31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5 조제 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변경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 부) 2. 사업자등록증(개인) (1 부)	2 만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 부) 2. 사업자등록증(개인) (1 부)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2.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23 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 ㎜×297 ㎜(일반용 60g/㎡ (재활용품))
지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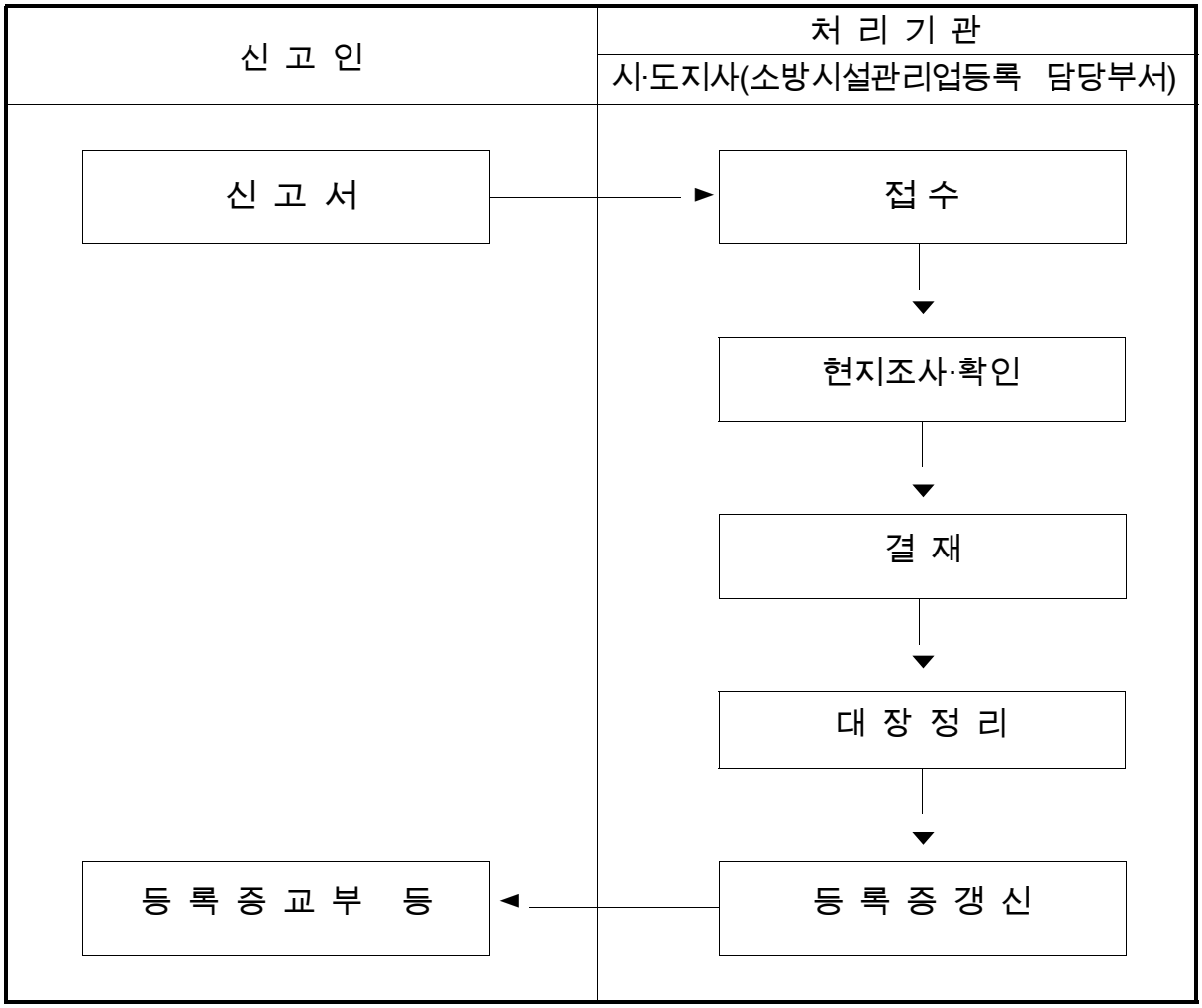

[별지 제 29 호서식] 2006.9.7> (앞 쪽)

<개정

<table>
<tr><td colspan="6">소방시설관리업지위승계신고서</td><td>처리기간
14 일</td></tr>
<tr><td rowspan="5">지위승계인
(합병후 새로 설립되는 법인)</td><td>①업 종</td><td></td><td>②등록번호</td><td>제 호</td><td>③등 록 일 자</td><td></td></tr>
<tr><td>④상 호</td><td></td><td>⑤대 표 자</td><td></td><td>⑥주 민 등 록 번 호</td><td></td></tr>
<tr><td>⑦주 소</td><td colspan="5">(전화 :)</td></tr>
<tr><td>⑧영 업 소 소 재 지</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⑨임 원</td><td colspan="2">성 명</td><td colspan="3">주 소</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승 계 전
(합 병 전)
등 록 인</td><td>⑩업 종</td><td></td><td>⑪등록번호</td><td>제 호</td><td>⑫등 록 일 자</td><td></td></tr>
<tr><td>⑬상 호</td><td></td><td>⑭대 표 자</td><td></td><td>⑮주 민 등 록 번호</td><td></td></tr>
<tr><td><16>주 소</td><td colspan="5">(전화 :)</td></tr>
<tr><td>승 계 사 유</td><td colspan="6"></td></tr>
</table>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32 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26 조제 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 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table>
<tr><td rowspan="2">구비서류</td><td>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td><td>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td><td>수 수 료</td></tr>
<tr><td>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 부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23 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 2 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명세서 1 부</td><td>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1 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1 부</td><td>2 만원</td></tr>
</tabl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재요령

○임 원 : 법인(양도인을 제외합니다)의 경우, 지위승계당시 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표자 외의 임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되, 기재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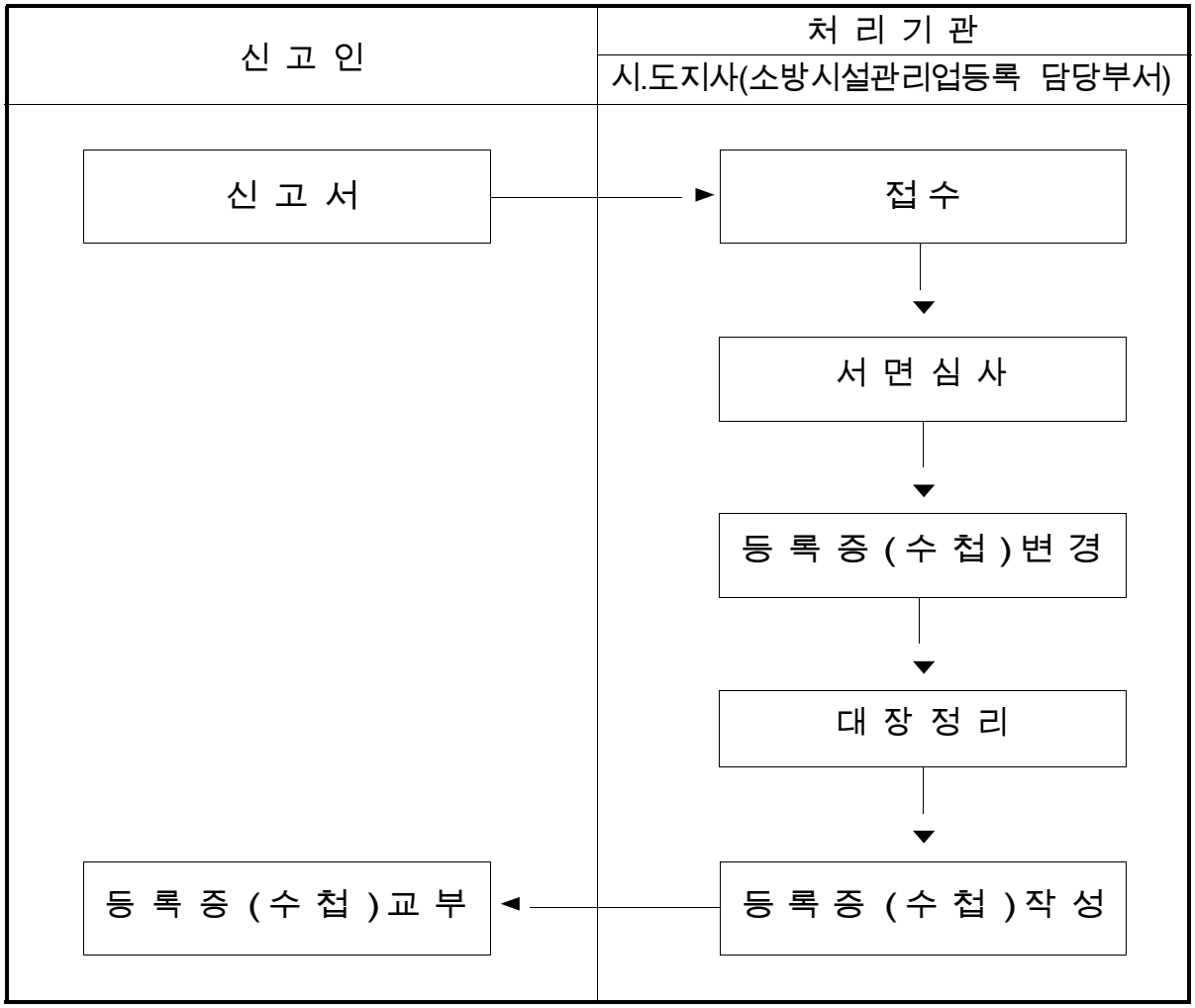

[별지 제 30 호서식] 2006.9.7> (앞 쪽)

<개정

소방시설관리업합병신고서

처리기간
14 일

신고인	합병되는 법인	①업 종		②등 록 번 호	제 호	③등 록 일 자	
		④상 호 (명 칭)		⑤대 표 자		⑥주 민 등 록 번 호	
		⑦주 소 ⑧영 업 소 소 재 지	(전화 :)				
	합병하는 법인	⑨업 종		⑩등 록 번 호	제 호	⑪등 록 일 자	
		⑫상 호 (명 칭)		⑬대 표 자		⑭주 민 등 록 번 호	
		⑮주 소 <16>영 업 소 소 재 지	(전화 :)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		<17>업 종		<18>등 록 번 호	제 호	<19>등 록 일 자	
		<20>상 호 (명 칭)		<21>대 표 자		<22>주 민 등 록 번 호	
		<23>주 소 <24>영 업 소 소 재 지	(전화 :)				
임 원 (감 사 포 함)		<25>성 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32 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6 조제 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법인등기부 등본 1 부	2 만원
	2.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1 부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23 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 2 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명세서 1 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재요령

○ 임 원 : 법인(피합병인을 제외합니다)의 경우에 지위승계당시 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표자외의 임원의 이름을 기재하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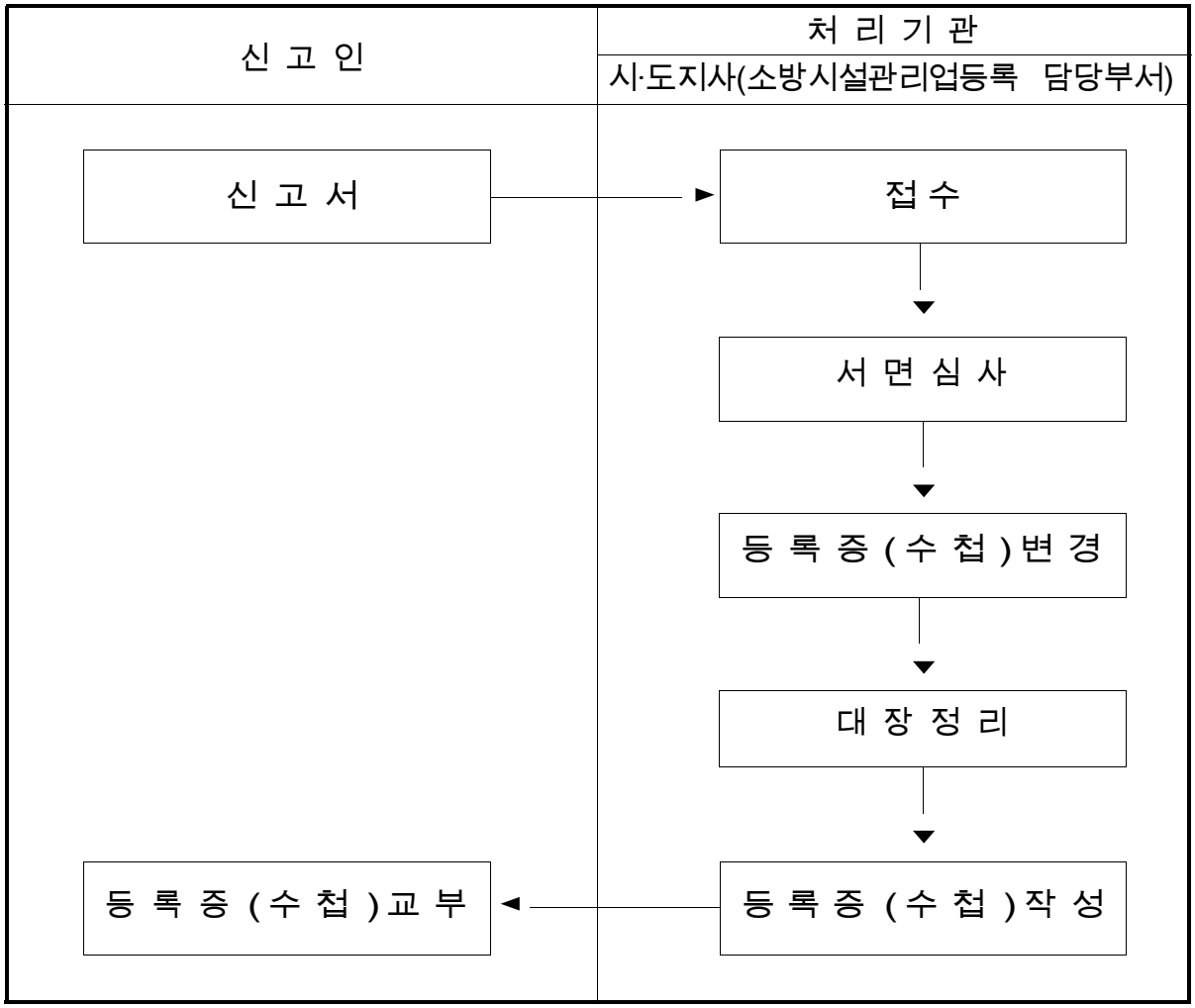

[별지 제 31 호서식]

수 료 증

제 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 사람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41 조제 1 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29 조제 3 항의 규정에 ( )급 방화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안전협회장

210 ㎜×297 ㎜(보존용지(1 종) 120g/㎡)

[별지 제 32 호서식]

□1 급방화관리업무
□2 급방화관리업무

강습교육수료자명부대장

쪽 수 :
작성연월일 :

결재			

번 호	사 진 (가로 3.5 ㎝ × 세로 4.5 ㎝)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강 습 시 간	강 습 지 역	합 격 일 자

주) 결재권자는 본회는 이사 이상, 지부는 지부장으로 한다.

210 ㎜×297 ㎜(보존용지(1 종) 70g/㎡)

[별지 제 33 호서식]

□1 급방화관리업무 □공공기관방화관리업무 강습교육원서 □2 급방화관리업무				처리기간 즉시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사 진 (가로 3.5 ㎝ × 세로 4.5 ㎝)
③주 소	(전화 :)			
④직 업		⑤소속 및 직위		
강습시간	20 년 월 일 ~ 월 일(일간)		접수번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3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
여 방화관리업무 강습교육을 받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수 수 료	
1. 사진(가로 3.5 센티미터 × 세로 4.5 센티미터) 4 매 2.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 사본(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합니다) 1 부 3. 재직증명서(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에 한합니다) 4. 방화관리자경력증명서(1 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자에 한합니다)	1 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업무	8 만원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업무	8 만원
	2 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업무	6 만 4 천
	2 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업무 과목을 일부면제받는 자	4 만 8 천 원

(자르는 선)

사 진 (가로 3.5 ㎝ × 세로 4.5 ㎝)	수 강 증	
	강습구분	
	번 호	
	성 명	

※ 뒤쪽을 잘 읽어보십시오.

접는 선

1. 일시 : . . ~ . .
(09:00 ~ 18:00)
2. 장소 :
3. 수강시간에는 왼쪽 가슴에 필히 패용하십시오.
4. 교육시간 10 분전에 입장하십시오.
5. 3 시간 이상 결강자는 미수료됩니다.

200 . . .

한국소방안전협회장

※ 수료후에 수강증 케이스를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요령

•직업, 소속 및 직위 : 직업이 있는 경우에 기재하십시오.

210 ㎜×297 ㎜(보존용지(1 종) 70g/㎡)

[별지 제 34 호서식] (앞 쪽)

( )급방화관리자시험응시원서

①응시번호		②강 습 지 역		사 진 (가로 3.5 ㎝ × 세로 4.5 ㎝)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⑥강 습 기 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3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 여 ( )급방화관리자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사진(가로 3.5 센티미터 × 세로 4.5 센티미터) 2 매 2. 방화관리자강습교육수료증 사본 1 부	별도로 정함

(자르는 선)

응 시 표

①응시번호		②강 습 기 간		사 진 (가로 3.5 ㎝ × 세로 4.5 ㎝)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년 월 일

소방방재청장

(뒤 쪽)

※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주민등록증 및 필기도구(흑.청.남색볼펜이나 만년필,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지우개, 칼 및 계산기 등)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 분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감시관의 지시에 의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잃어버린 분은 사진 1 매를 가져와 시험시행본부에서 다시 교부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분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붙은 증명서를 가져와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가져오지 아니하신 분은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응시할 수 없습니다).

210 ㎜×297 ㎜(보존용지(1 종) 70g/㎡)

[별지 제 35 호서식]

실무교육수료자명부

(　　년도　　회)　　실무교육종별:　　등급:

①번 호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⑤교육기간	⑥근 무 처

210 ㎜×297 ㎜(보존용지(1)　70g/㎡)

[별지 제 36 호서식]

일련번호			–			–				소 방 검 사 서
관 리 구 분			–							
①점검결과										②조치할 내용
소방관계법령위반사항										
화재예방조례 위반사항										
그 밖의 위반사항										
※ 관계자료										

년 월 일

소방서장 귀하

소방검사자

소속 : 계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계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관계인	③대상명					
	④주 소					
	⑤성 명		⑥직 위		⑦전 화	
⑧의 견 진 술						

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서명 또는 인)

210 ㎜×297 ㎜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 37 호서식] (앞 쪽)

※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자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

①응 시 번 호		②응시자격구분		사 진 (가로 3.5 ㎝ × 세로 4.5 ㎝)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⑥시 험 면 제	년도 제 회(월 일 시행)제 1 차 시험합격			⑧확인자
⑦면 제 과 목	1 차 시험			
	2 차 시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26 조 및 동법시행령 제 3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틀리거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27 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년 월 일

수수료
1 만원

소방방재청장 귀하

(자르는 선)

응 시 표

①응 시 번 호		②응시자격구분		사 진 (가로 3.5 ㎝ × 세로 4.5 ㎝)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⑥면 제 과 목	1 차 시험			
	2 차 시험			
⑦시 험 일 시	년 월 일부터 까지		⑧시험장소	

년 월 일

소방방재청장

210 ㎜×297 ㎜(보존용지(1 종) 70g/㎡)

(뒤 쪽)

* 기재요령

•앞면의 기재사항중 응시번호.시험일시 및 시험장소를 제외한 사항은 원서 제출자가 기재합니다.

•응시자격구분 : 다음 표의 응시자격구분란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번호	응 시 자 격 구 분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합니다)이 있는 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8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9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자르는 선)

※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주민등록증, 필기도구(흑.청.남색볼펜이나 만년필,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지우개, 칼, 계산기 등)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 응시표 분실자는 사진 1매를 지참, 시험시행본부에서 재교부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등)를 지참,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미지참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 접수기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게시된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지정기간내에 제출하고 제출된 증빙서류의 확인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그 밖의 증거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지정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방방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합 격 예 정 자 발 표 예 정 일	
응시자격의 증빙서류 제출기간	

[별지 제 38 호서식]

경력(재직)증명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증 명 사 항	④재직기간	⑤소속 및 직위	⑥담당업무내용(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		
	~		
	~		

· 이 증명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26 조제 2 항 및 동법시

행령 제 33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증명을 위한 것 이므로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 사실과 다른 때에는 본인의 응시자 격 및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처분은 물론 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동행사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위와 같이 사실 그대로 작성 하였으니 위의 경력(재직)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동행사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명칭 또는 상호 :

소 재 지 :

대표자 :

작성자 직.성명

소방방재청장 귀하

210 ㎜×297 ㎜ 60g/㎡(재활용품))
(일반용지

[별지 제 39 호서식]

제 호

소방시설관리사증

성 명 :	사 진
주 소 :	(가로 5 ㎝ × 세로 7 ㎝)
생년월일 :	
합격연월일 : 년 월 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26 조제 4 항 및 동법시행령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방방재청장

비 고

1. 테두리는 금박
2. 무궁화 및 원내글자는 금박

210 ㎜×297 ㎜(보존용지(1 종) 120g/㎡)

[별지 제 40 호서식] (표 지)

소방시설관리사수첩

소 방 방 재 청

1. 흑색표지
2. 무궁화 및 모든 글자는 금박

80 ㎜×130 ㎜(보존용지(1 종) 120g/㎡)

주 의 사 항

1. 소방시설관리사는 점검업무 수행시 항상 이 수첩을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자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는 그에 응하여야 합니다.
2. 소방시설관리사수첩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26 호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자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3. 자격의 취소, 실효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이 수첩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제 2 쪽)

소방시설관리사수첩

자격번호 제 호
성 명 :
생년월일 :

사 진
(가로 5 ㎝ × 세로 7 ㎝)

자격취득일 : 년 월 일
발행연월일 : 년 월 일

소방방재청장

변 경 사 항		
구 분	기 재 내 용	확 인

[별지 제 41 호서식]

소방시설관리사증교부대장

쪽 수 : 작성연월일 :	결재			

관리사증번호	사진 (3.5 ㎝ × 4.5 ㎝)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최종학력	최종경력	다른 자격 취득 사항	재교부상황											
								날짜	사유	확인	날짜	사유	확인	날짜	사유	확인	날짜	사유	확인

364 ㎜×257 ㎜(보존용지(1 종) 70g/㎡)